

동식물 검역의 대내외 여건변화와 대응방안

이	재	옥	연구위원
김	동	민	책임연구원
임	정	빈	연구원
서	진	교	책임연구원

빈

면

머 리 말

교통수단의 발달과 농산물무역의 자유화 및 국제화로 동식물 검역의 대내외 여건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특히 UR 농산물협상의 타결로 농산물 수입 증가, 수입 품목의 다양화, 수입국의 다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대내적으로는 수입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안전성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유입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외래 병해충 및 악성 전염병으로부터 국내 농림수산물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UR 위생 및 동식물검역 협상 타결에 따라 국제기준과의 조화, 동등성 원칙 인정, 위험평가제도의 도입, 명료성 확보 등 과학적 근거주의에 입각한 동식물 검역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 여건 변화로 국내 동식물검역의 일대 정비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연구는 우리 나라 동식물 검역제도의 현행 문제점을 파악하고 선진국의 사례 및 UR 동식물 위생검역 합의문을 분석하여 앞으로 우리 나라의 동식물 검역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동식물 검역의 중요성 인식에 기여하고 동식물 검역 관련 정책의 수립에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

1993.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정 영 일

빈

면

목 차

제 1 장 서 론	1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1
2. 연구목적	4
3. 연구방법과 범위	5
제 2 장 GATT/UR 위생 및 검역분야 협상과 시사점	7
1. UR 위생 및 검역(SPS) 분야 협상 배경과 추이	7
2. 위생 및 검역분야 협상에서의 주요 쟁점과 각국의 입장	12
3. 위생 및 검역분야 최종합의문의 내용과 평가	16
4. UR 위생 및 검역분야 협상 타결의 시사점	25
제 3 장 우리 나라 동식물 검역의 현황과 문제점	31
1. 제도 및 조직 운영	31
2. 인력, 시설, 장비, 기술, 정보	37
3. 검역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41
제 4 장 향후 동식물검역의 개선방향	44
1. 인식의 전환	44
2. 제도 및 조직 운영에 대한 개선 방향	46
3. 전문인력 충원 및 육성, 시설 및 장비 확충	62
4. 관련 기관과의 협조 및 공조체제 구축	67

부 록 1 UR SPS 분야 주요 의제별 각국의 기본입장	70
부 록 2 UR SPS 분야 합의문(국문, 영문)	78
부속서 A 용어의 정의(Definition)	89
부속서 B 위생 및 검역규정의 명료성(Transparency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Regulations)	92
부속서 C 방역, 검사 및 허가절차(Control, Inspection and Appoval Procedure)	95
부 록 3 UR SPS 분야 미국의 수정 제안 내용	117

표 목 차

제 3장

표 3-1	식물검역소의 5급 공무원 전출입 현황, 1985-92	38
표 3-2	한·일 양국간의 소독시설 비교	40

제 4장

표 4-1	우리 나라에 침입한 해충의 종류	46
표 4-2	Negative System과 Positive System의 비교	48
표 4-3	국별 조건부 수입요청 내용	56
표 4-4	주요 선진국의 식물검역 연구기구 현황	64

그림 목차

제 1장

그림 1-1	동식물검역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 변화	2
그림 1-2	연구추진 체계도	5

제 2장

그림 2-1	UR SPS 협상 추진 경위	9
그림 2-2	UR SPS 협상의 기본 구도	11
그림 2-3	SPS 협상분야에서 국가별 전반적인 입장	12
그림 2-4	SPS 합의문의 분석도	26

제 3장

그림 3-1	우리 나라의 동식물 검역체계	32
--------	-----------------------	----

빈

면

제 1 장

서 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 1980년대 중반 이후 GATT/BOP 조항 원용 중단에 따른 단계적인 수입자유화와 한·중 국교수립에 따른 중국산 저가농산물의 대량 유입 등 농림수산물의 시장개방폭이 확대됨에 따라, 동식물검역 물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수입 농축산물의 다양화 및 수입국의 다변화 등, 동식물검역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음(그림 1-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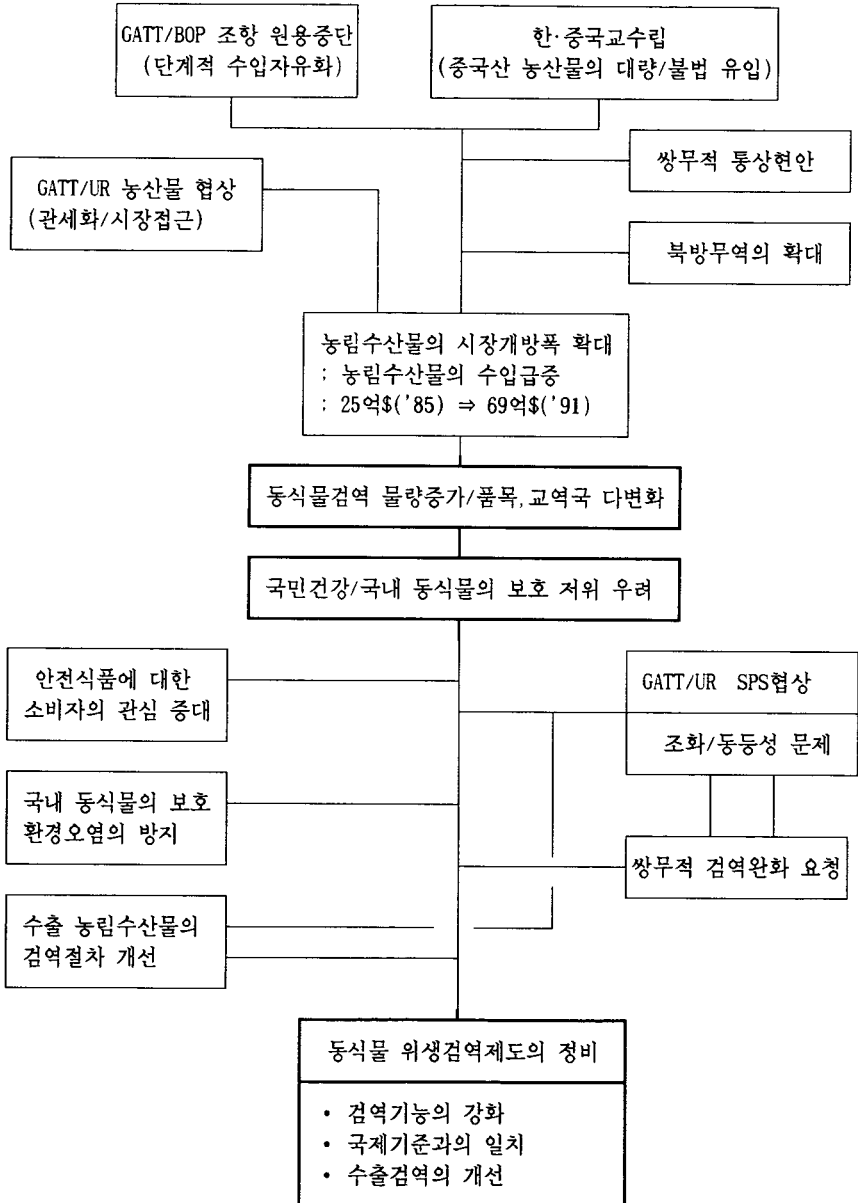
- 검역 건수 및 물량의 변화 추이

- 동물검역 건수: 9,833건 (1980) → 31,904건 (1990); 324% 증가
- 식물검역 건수: 26,088건 (1980) → 61,424건 (1990); 235% 증가
- 동물검역물량: $261,878^M/T(1980) \rightarrow 759,195^M/T(1990)$; 290%증가

- 검역품목의 변화 추이: 1,200여종(1980) → 2,350여종(1990)

- 교역국가수의 변화 추이: 80여개국(1980) → 115개국(1990)

그림 1-1 동식물 검역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 변화



- GATT/UR 농산물협상 타결에 따라 향후 농축산물의 전면적인 시장개방이 예상되고 있으며, 아울러 쌍무적 통상마찰과 남북한간의 직교역 물량의 증대 등 북방무역의 확대 가능성(구상무역의 추진에 따른 북방 농림수산물의 수입 증가)을 감안할 때 향후 이와 같은 검역 물량의 대폭적 증가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 한편 대내적으로는 국민소득의 증대에 따른 식품소비 패턴의 고급화·다양화, 특히 안전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증대되어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검역 문제가 주요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위생 및 동식물검역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는 위생 및 동식물검역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제도의 미비, 제반시설 및 장비, 전문인력의 부족, 국제검역 정보 및 기술의 원활한 교류 미비 등으로 동식물검역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지 못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도 전무한 실정임.
- 특히 수입 농림수산물로부터의 국민건강 및 국내 동식물의 보호라는 차원(인체 유해 항생물질 및 잔류농약, 중금속 등의 잔류기준과 악성 가축 전염병 및 외래 병해충의 국내 유입방지 차원)에서 철저한 검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향후 농림수산물의 수입개방 확대 및 식품의 대외의존도 심화에 따른 국민건강 및 국내 동식물의 보호 수준 저위가 우려되고 있음.
 - 수입 자몽에서 잔류농약(알라) 검출 사건
 - 수입 사과쥬스에서 발암물질(다미노자이드) 검출 사건
 - 중국산 밀수 쇠고기에서 발암성 유해물질 검출 사건
 - 미국산 수입사료에서 발암성 농약 검출 사건
 - 미국산 옥수수에서 발암성 물질(아플라톡신) 검출 사건
- 또한 대외적으로는 GATT/UR 농산물협상에서의 동식물위생·검역(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조치에 대한 합의문 채택으로, 지금까지 GATT 체제 밖에서 개별 국가의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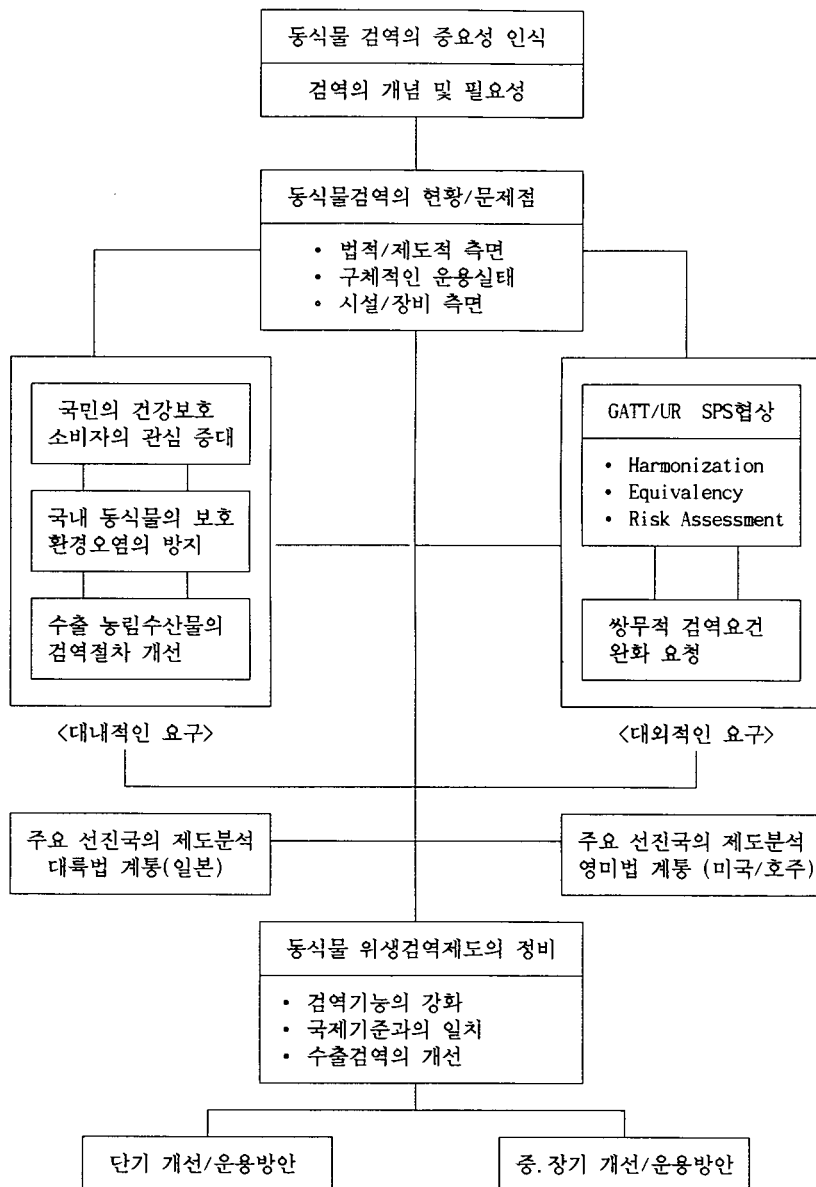
간접적인 교역왜곡 수단으로 활용되어 오던 SPS 조치가 종전과는 상이한 국제적 규율 밑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국내 동식물 위생검역조치에 대한 일대 정비가 요청되고 있음.

- 국제기준과의 조화 문제 (Harmonization)
 - 동등성 원칙 인정 문제 (Equivalency)
 - 위험평가 문제 (Assessment of Risk)
 - 지역별 SPS 규제 실시 문제(Adaptation to Regional Condition)
 - 명료성 확보 문제 (Transparency)
- 아울러 합의문 채택에 따라 수출 농축산물에 대한 과학적·객관적 검역자료를 제공할 경우, 우리의 위생검역을 문제시 삼았던 국가의 SPS 규제 완화를 기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바, 당면과제인 농림수산물의 수출촉진 및 확대를 위해서도 수입국의 검역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출검역제도의 적절한 개선이 필요함.
- 교역 상대국가의 위험평가실시에 따른 대응방안 수립
 - 수출검역절차의 간소화 및 현지 검역 등의 제도 개발 등
- 따라서 이와 같은 동식물검역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국제화·개방화에 따른 동식물 검역제도의 정비, 개선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대한 체계적 종합적인 연구가 시급한 실정임.

2. 연구목적

- GATT/UR SPS 협상 등 위생 및 동식물검역에 대한 대외적인 상황 변화와 주요 선진국의 동식물 검역 관련 제도 및 운용 실태를 체계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우리의 검역체계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 이에 근거하여 향후 국제화·개방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동식물 검역조치의 운용방안을 수립/제시함(그림 1-2 참조).

그림 1-2 연구추진체계도



3. 연구방법과 범위

3.1. 연구방법

- 관련 문헌조사
 - 동식물검역 관련 GATT 문서 분석
 - 동식물검역 관련 국내외 문헌을 통한 제도 및 법령 비교 연구
- 현지 관련기관 방문조사
 - 국내 동식물 검역소 및 지소 방문조사를 통한 현황 및 문제점 파악
- 관계 전문가 중심의 토론회 개최를 통한 의견수렴

3.2. 연구 범위

- GATT/UR 농산물협상 SPS 분야 논의내용은 위생 및 동식물검역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나 위생분야는 보사부 소관으로, 농림수산부 소관 사항인 동식물검역 분야로 연구 범위를 국한.
- 동식물검역 자체의 연구 특성상 기술적인 내용이 상당 부분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본연구는 경제적 함축성 및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에 중점을 둔.
 - GATT/UR SPS 협상의 내용과 시사점 도출(경제적 함축성 중심)
 - 현행 동식물검역 체계 (법령 및 제도) 분석
 - 농축산물 수출입 검역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도출
 - 주요국의 동식물 검역제도 상호 비교분석(제도/경제적 함축성 중심)
 - 관련 정보 및 기술의 수집과 선진국과의 교류 협력방안의 모색

제 2 장

GATT/UR 위생 및 검역분야 협상과 시사점

1. UR 위생 및 검역(SPS)분야 협상배경과 추이

1.1. 협상배경과 목적

○ GATT XX;(b)¹항의 남용

- GATT상 일반적 예외로 인정받고 있는 위생 및 동식물 검역조치를 각국이 자의적으로 해석, 사실상 광범위한 수입규제 수단으로 활용
- 특히 통보의무가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각국은 임의로 규제기준을 설정, 수입농산물에 대해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관행
→ 농산물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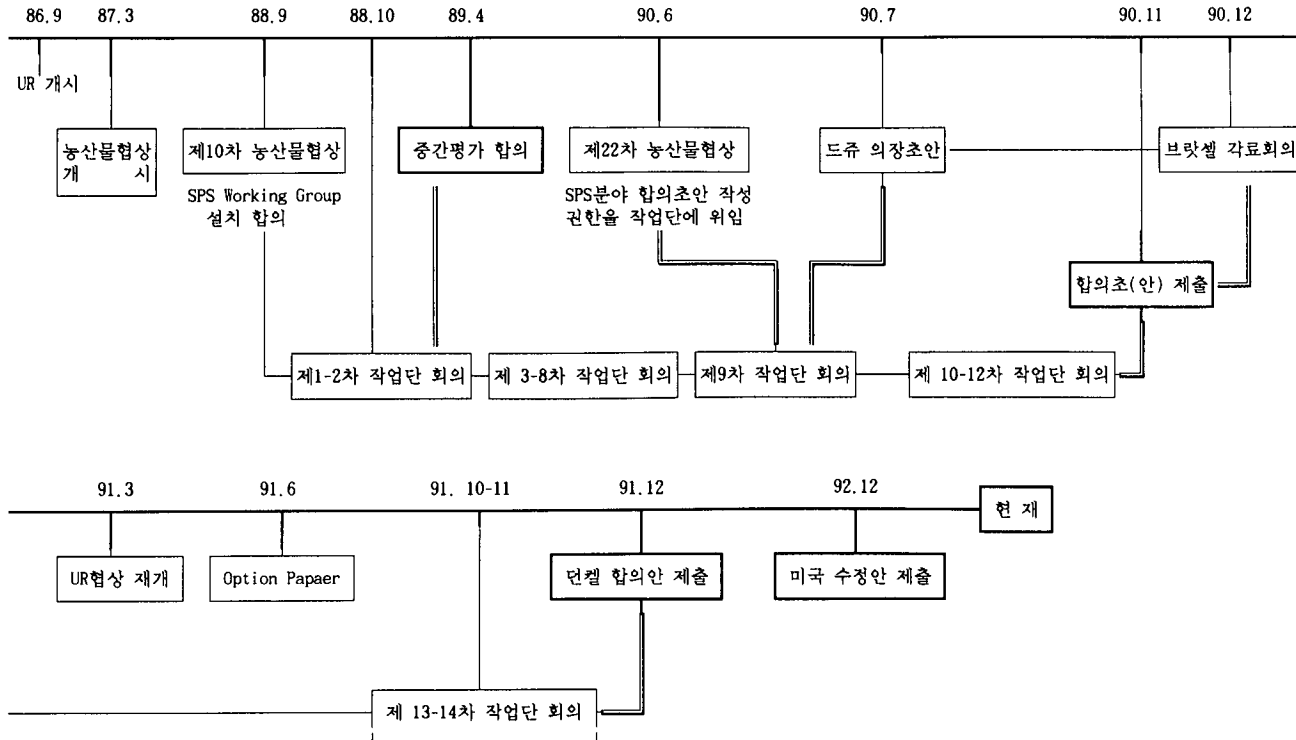
¹ GATT XX(일반적 예외) (b)항 “본협정문의 어떤 조항도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보호를 위한 계약국의 조치 채택 혹은 실시를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 ,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the adoption or enforcement by any contracting party of measures; . . . , (b) necessary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 GATT내 위생 및 검역규제의 정당성을 판단할 기능 미흡
 - GATT 규정 자체의 모호성
 - 관련 패널의 판례도 전무
 - GATT의 전문성 결여
 → 규정의 합리적 해석이 곤란
- * 사실상 위생 및 동식물 검역 문제는 관련 국제기구(예; CODEX, IPPC, OIE 등)에서 전문적으로 다루어져 왔음.
- 협상 목적
 - 농산물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대한 GATT 규율 강화
 - “ 관련 국제합의를 고려하여 위생 및 동식물 검역규제와 장벽이 농산물교역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minimizing the adverse effects that sanitary and phyto sanitary regulations and barriers can have on the trade in agriculture, taking into account the relevant international agreements)”

12. 협상 추진 경위

- 농산물협상에서 小議題의 하나로 논의해 오다가 의제의 전문성을 감안, 제10차 농산물협상(1988. 9)에서 「위생·검역 작업단(Working Group on SPS)」 설치에 합의. 이후 SPS 협상은 기술적 문제를 중심으로 작업단회의를 통하여 진행되어 왔음(그림 2-1 참조).
- 1988. 10. 제1차 작업단회의를 시발로 1990. 11.까지 모두 12차례의 작업단회의를 거쳐 「브라셀 각료회의(1990. 12. 5)」에 상정할 SPS 분야 합의 초안이 마련됨(1990. 11. 20).
 - 제 1,2차 작업단회의 이후 중간평가합의 도출
 - 제 3-8차 작업단회의에서 주요국의 제안 및 의제 토의
 - 제22차 농산물협상('90.6)에서 SPS 분야 합의안 작성권한을 작업단에 위임

그림 2-1 UR SPS 협상 추진 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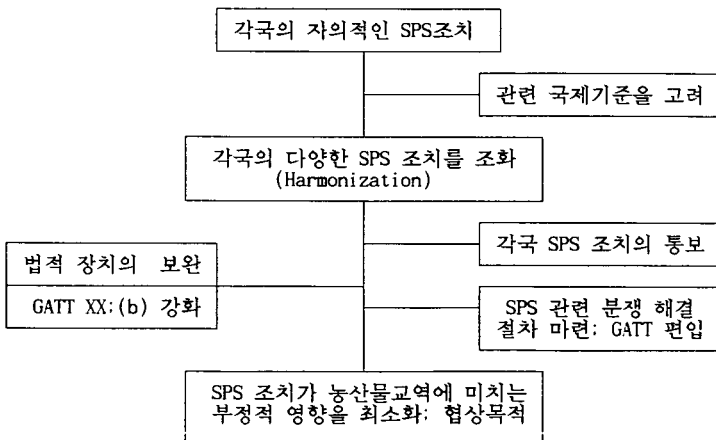
- 지금까지의 협상결과를 토대로 GATT 사무국이 SPS 분야 합의 초안을 작성·제시('90. 6.28)
- 제9차 작업단회의에서 GATT 사무국이 작성한 합의초안을 검토
- TNC회의('90. 7)에 SPS 합의 초안(드류 초안) 상정
- 제10-12차 작업단회의에서 드류 의장 초안을 검토/수정
- 1990. 11. 20 브랏셀 각료회의에 상정할 합의 초안(MTN.GNG/NG5/WGSP/7) 마련(주요쟁점은 괄호로 처리; 브랏셀에서 결정 예정)
 - 브랏셀 각료회의에서의 합의도출 실패로 SPS 합의초안에 대한 토론 자체가 무산됨.
- 1991. 3. UR 재개 이후 SPS 협상은 이미 상당한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공식접촉이 이루어져 왔으며, 던켈 총장의 농산물그룹 대안서 (Option Paper)가 제시된 이후 1991. 10-11 제13-14차 작업단회의가 개최됨.
 - 「브랏셀 각료회의」에 상정되었던 합의문 중 괄호로 처리한 부분을 중심으로 각국의 입장을 개진하는 형식으로 진행
- 1991. 12. 21 던켈 총장은 자신의 책임하에 SPS 합의 초안을 제시.
 - 주요 쟁점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적절히 절충한 문건
 - 그러나 채택에 실패
- 1992년 공식협상은 없었으며, 같은 해 10월 미국과 EC간 「유지작물 및 농업보조금 합의(일명 블레이하우스 협정)」 도출 이후 활발해진 UR 협상에서 미국이 던켈 초안의 SPS 부분에 대한 수정제안을 함으로써 SPS 분야 협상은 논란이 재연됨.
- 1993년 「신속처리 권한(Fast-Track Authority)」의 연장과 QUAD(미국, EC, 일본, 캐나다) 통상협상, 7월 동경에서 개최된 「서방선진 7개국 정상회담(G-7)」 등에서 UR 협상의 연내 타결이 점차 가시화 되고 다른 한편 GATT 사무국의 개편(던켈 총장의 퇴진과 신임 서덜랜드 총장의 취임)으로 협상 분위기가 연내 타결쪽으로 전환됨.

- 1993년 10월 이후 드니(Denis) 시장접근 그룹 의장의 주제 아래 주요 14개국 회의가 수시로 개최되면서 이견 격차를 해소시켜 나감.
- 1993년 12월 15일 UR 협상 타결과 함께 SPS 분야 합의문 도출
 - 미국의 수정제안이 대부분 반영됨.

1.3. 협상 추진 구도

- 위생 및 검역조치가 농산물교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규제조치의 조화(Harmonization)방안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협상구도가 설정됨(그림 2-2 참조).

그림 2-2 UR SPS 협상의 기본 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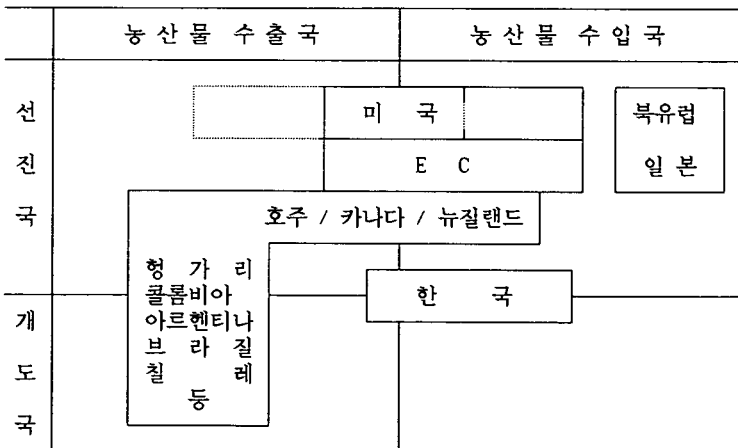


2. 위생 및 검역분야 협상에서의 주요 쟁점과 각국의 입장

2.1. 국별 전반적인 이해관계

- 위생 및 검역분야(SPS) 협상은 농산물협상과는 달리 선진국과 개도국간 그리고 농산물 수출-수입국간 견해가 명확히 대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쟁점별로 입장이 대립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임.
- 이는 대부분의 국가가 일방적으로 농산물 수출 또는 수입만을 전적으로 하는 국가가 아닌 관계로 한편으로는 수출국의 입장에서 수입국의 SPS 규제조치를 완화하려는 입장인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수입국의 입장에서 자국민의 건강 및 동·식물 보호를 위해 위생및 검역규제를 철저히 하려는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임.

그림 2-3 SPS 협상분야에서의 국가별 전반적인 입장



* 미국은 당초 수출국중심의 입장이었으나 1990년말 이후 수입국 중심의 입장으로 바뀜.

- 따라서 수입선진국으로서의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는 북구와 일본, 그리고 수출개도국으로서 SPS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케언즈 그룹 중 일부 남미국가들을 제외하면 대개의 국가들은 쟁점별로 입장이 다양함(그림 2-3 참조).

2.2. 주요 의제별 논의현황

2.2.1. 주요 의제

Q. 1. 각국의 상이한 SPS 조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

- 1-1. 개선이 요구되는 SPS 규제조치의 범위 확정 문제
- 1-2. 관련 국제기구의 기준·지침에 근거해 조화시킬 경우 해당 국제기구의 범위 문제
- 1-3. 국제기준이 없을 경우의 조화방법
- 1-4. 국제기준보다 엄격한 SPS 조치의 인정 여부

Q. 2. 위험평가제도의 도입 문제

- 2-1. 위험평가제도의 운용방법
- 2-2. 적정보호수준의 평가방법

Q. 3. 동등성 인정 문제

Q. 4. 병해충 무발생/제한적 발생지역 개념의 인정

Q. 5. 식품/사료 첨가제와 오염물질에 대한 수입국의 승인 문제

Q. 6. 분쟁 해결절차

Q. 7. 기타

- 7-1. 수입국의 경과조치
- 7-2. 지방정부의 합의문 준수 문제
- 7-3. 제도적·법적 장치보완(GATT XX:(b) 보완)
- 7-4. 개도국우대
- 7-5. SPS 의 투명성

2.2.2. 주요 의제별 각국의 기본입장(부록 1 참조)

2.2.3. 의제별 논의 현황(1993. 11월 기준)

구 분	주 요 의 제	세 부 내 용
합의된 분야	GATT 규범의 강화	- 국제기준의 준수 - 과학적 근거주의 - 차별적용의 금지 - 위험평가제도의 도입 - 관련법규의 상호통보 - 병해충 무발생지역의 인정
	개도국우대	- 기술지원 제공 - 특별 유예기간 부여
	SPS 위원회 설치	합의문 시행 및 각국의 SPS 조치 조화를 감시
대체로 합의되고 있는 분야	- 국제기준보다 엄격한 조치의 인정 - 합의문 이행시기 및 분쟁 해결절차 규정 - 합의문 재검토 시기	
쟁점 분야	- SPS 개선의 적용대상 범위 - 식품첨가제 및 잔류물질의 허용기준에 대한 수입국의 승인제도 - 위험평가시 교역상황의 고려 여부 - 지방정부의 합의문 준수 여부	

1) 국제기준보다 엄격한 조치 사용 인정

- 남미 등 수출개도국: 특별한 예외적 상황에 한하여 위험평가 제도에 근거한 예외 인정.
- 미국, EC, 북구, 일본, 캐나다, 한국 등: 각국의 적정 SPS 보호권리를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과학적 정당성에 근거하여 인정.

2) SPS 개선의 적용대상범위: 환경보호, 소비자의 관심사항 및 동물의 복지까지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

- EC, 스위스: 적용
- 미국, 케언즈, 북구, 일본, 한국 등: 적용 배제(인간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SPS 대상으로는 부적절)

3) 식품첨가제 및 잔류물질 허용기준에 대한 수입국의 승인제도:

식품첨가물 및 잔류물질허용의 국제기준이 존재하나 국내적으로는 인가되지 않은 경우의 국내 처리 문제

- 케언즈 그룹, 오스트리아: 고려할 필요 없이 무조건 인정
- 미국, 한국, 일본: 국제기준을 검토 없이 그대로 국내에 적용하는 것은 국민보건위생상 무리한 관계로 수입국의 승인절차를 거친 후 수입
- EC: 국제기준에 근거하여 잠정적인 국내 처리기준을 활용
- 의장: 국제기준 존재시 일정기간(4개월/9개월/2년) 경과후 국내 적용

4) 위험평가시 교역상황의 고려 여부: 위험평가시 SPS 규제로 인해

수출국이 입게 될 무역상의 손실을 고려

- 남미: 수출국의 교역기회를 최대한 보장
- 미국, 한국, 북구 일본 등: 조항 삭제
- EC: 교역기회를 최대화 ⇒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절충안)

5) 지방정부의 의무준수 여부

- EC: 의무 준수 배제
- 여타 국가: 의무 준수

3. 위생 및 검역분야 최종합의문의 내용과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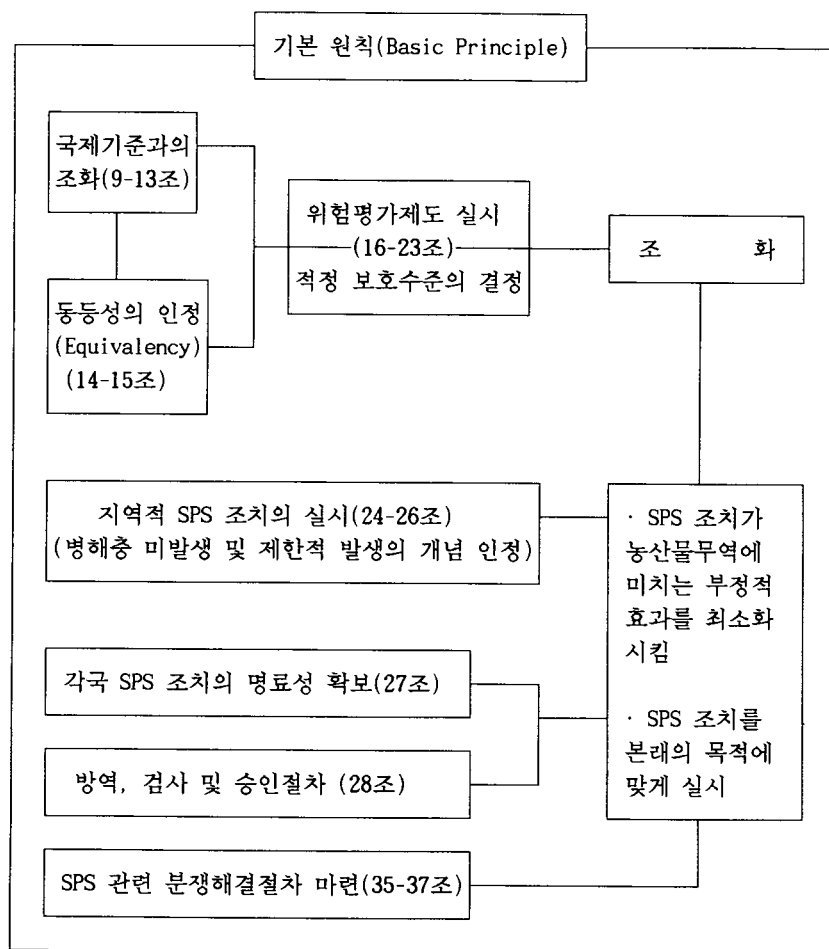
3.1. 합의문의 주요 내용

- 구성: 서문을 포함하여 본문 46조 및 3개의 부속서
 - 서 문 (1조-4조),
 - 본 문: 기본권리 및 의무(5조-8조), 조화(9조-13조), 동등성(14조-15조), 위험평가 및 적정보호수준(16조-23조), 병해충 미발생/제한적 발생(24조-26조), 규제조치의 투명성(27조), 방역, 검사, 허가절차(28조), 기술지원(29조-30조), 개도국우대조치(31조-34조), 분쟁 해결(35조-37조), 위생/검역규제위원회(38조-44조), 시행(45조), 최종규정(46조)
 - 부속서 1 (용어의 정의)
 - 부속서 2 (위생 및 검역규제의 투명성)
 - 부속서 3 (방역 및 검사, 허가절차)

3.1.1. 기본 원칙(기본권리 및 의무)

- 합의문과 합치되는 경우 SPS 실시 권한 보유(5조)
- SPS 본래 목적을 위해서만 검역규제를 운용하되 과학적 증거(Scientific Evidence)주의에 입각(6조)
- 무차별/내국민 대우(7조)
- 합의문과 일치되는 조치는 GATT 1994 관련 규정에 합치되는 것으로 간주(8조)

3.1.2. 주요 골격



3.1.3. 세부 내용(부록 2 참조)

1) 국제기준과의 조화 문제

- 관련 국제기구의 기준, 지침, 권고를 기초로 각국의 SPS 조치를 조화시킴(제9조)
 - 국제기준이 있는 경우는 국제기준에 근거하여 조화
 - 국제기준, 지침, 권고에 부합하는 SPS 조치는 GATT 1994 관련 조항과 합치하고 본래의 SPS 목적상 필수적인 조치로 간주
 - 국제기준이 없을 경우
 - i) 과학적 정당성(scientific justification)에 근거하거나 또는
 - ii) 위험평가에 기초해 적절한 보호수준이라고 결정할 경우 국제 기준, 지침, 권고에 근거한 보호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SPS 조치를 도입/유지할 수 있음.
- * 「과학적 정당성」이란 이용 가능한 과학적 정보와 조사.평가에 근거한 결론으로서 동결론에 따라 국제기준이 적정보호수준 달성에 충분치 않다고 결정할 수도 있음
- SPS 위원회에서 각국의 SPS 조치 조화진전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절차를 개발

2) 동등성 원칙(Principle of Equivalence)의 인정

- 수출국이 자신들의 SPS 조치로 인한 보호수준과 수입국의 SPS 조치에 의한 보호 수준이 동일함을 객관적으로 증명(objectively demonstrate)할 경우, 수입국은 수출국의 해당 SPS 조치를 수입 국의 SPS 조치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
- 동등성 인정을 위해 수출국은 수입국이 원할 때 자국의 검사, 시험,

기타 관련 검사절차 등의 자료를 수입국에게 제공.

- 수입국은 수출국의 동등성 인정 요청시 협의할 의무

3) 위험평가(Assessment of Risk)제도의 도입과 적정 보호수준의 결정

- 국제기구가 개발한 위험평가방법을 고려하여 자국의 SPS 조치가 이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장
- 위험평가시 고려기준
 - 이용 가능한 과학적 증거
 - 관련 가공 및 생산방법
 - 관련 검사 및 시료채취, 시험방법
 - 특정 병원 및 해충의 발생수준
 - 병해충 미발생지역의 존재
 - 생태 및 환경조건
 - 검역 및 기타 처리사항
- 적정보호수준 결정시 고려요인
 - 경제적 요인
 - 병원.해충의 발생 또는 전파시 생산 및 판매에 미치는 손실
 - 수입국내에서의 방제·박멸 비용
 -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대체방법의 소요비용
 - 교역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SPS가 갖는 교역제한 효과를 최소화
- 적정보호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수준 이상의 무역제한조치로 SPS 조치를 사용해서는 안됨.
 - 요구되는 수준 이상의 무역제한조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적정보호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여타의 다른 조치가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무역제한이 그보다 현저하게 낮은 다른 조치가 없을 경우”로 설정.
-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입수 가능한 자료에 근거하여 잠정적

으로 SPS 조치를 운용할 수 있음.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재검토함.

- 특정국의 SPS 조치가 자국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혹은 제한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만일 해당 조치에 대한 국제기준이 없거나 혹은 있다고 해도 동조치가 국제기준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수출국은 해당국에게 그들의 SPS 규제사유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국은 이를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음.

4) 병해충 미발생 및 제한적 발생지역

- 수입국의 SPS 조치는 수출국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
- 지역별 SPS 특성 평가시 병해충 발생수준 및 박멸 또는 방제정책과 관련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 병해충 미발생/제한적 발생지역의 개념을 인정
 - 상기 지역의 결정은 지리적, 생태학적, 역학적 조건과 과거 SPS 조치 운용 실태에 근거
- 수출국은 병해충 미발생 또는 제한적 발생의 증거를 수입국에게 제공.

5) 투명성(Transparency)

- 체약국은 SPS 규제조치의 변경 내용을 통보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
 - 채택하고 있는 모든 SPS 관련 규정(법률, 법령 등)의 발간
 - 관련 체약국의 질의에 대한 답변 및 자료 제공의 책임이 있는 행정기구 확보
 - 통고절차 규정

6) 방역, 검사 및 승인절차

- 개별 체약국의 식품, 음료, 사료첨가제의 사용승인 및 오염물질의 허용기준 설정을 포함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검역, 검사방법 및 절차규제를 합의문에 일치시킴

- 수입상품이 국내산 동종상품에 비하여 불리하지 않도록 절차를 진행시켜 불필요한 지연을 없앴
- 각 절차의 기준처리기간 공표, 신청인의 요구시 예정 처리기간 통보
- 검사 또는 승인절차상 필수적인 정보만을 요청
- 관련 비용은 국내산 동종상품과 동일
- 관련 소송심사절차 및 소송후 시정절차 확립

7) 기술지원

- 개도국에 대한 검역 관련 기술지원
 - 자문, 신용공여, 기부 및 무상원조 등

8) 개도국 특별우대

- 개도국의 수출기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심품목에 대한 장기간의 유예 허용
- 합의결정문에 따른 의무준수를 전부 또는 일부 유예

9) 협의 및 분쟁 해결절차

- SPS 조치 관련 분쟁 해결은 GATT 1994 22조 23조와 WTO의 「분쟁 해결 및 절차에 관한 협정」을 적용
- 패널에서는 관련 당사국과의 협의하에 패널에서 선정된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함

10) 행정기구

- 정기적 협의기회 제공을 위해 「위생 및 검역규제위원회」 설치
 - 회원국간 협의/협상 장려 및 촉진
 - 회원국간 국제기준 사용 장려, 국제제도와 국내제도간의 조정
 - 관련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조

- 국제적인 조화의 진전 상황과 국제기준의 이용 상황을 감시하기 위한 절차 개발
- 교역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SPS 조치에 대한 국제적 기준 작성
- 시행 3년 후 합의문 운영 및 시행을 재검토

11) 시행 및 최종규정

- 지방정부/비정부기구가 관련 규정을 준수토록 적절한 조치 시행
- 저개발도상국의 경우 수입에 영향을 주는 SPS 규제에 대하여 그 적용을 WTO 발효 후 5년간 합의문 적용 유예
- 기타 개도국은 제23조(SPS 규제조치 설명), 제27조(명료성)를 제외하고 WTO 발효 후 2년간 합의문 적용 유예

3.2. 합의문의 평가

3.2.1. 위생 및 검역 문제가 GATT체제로의 편입

- 종래 관련 국제기구를 통해 전문적으로 다루어져 온 SPS 분야가 GATT 체제로 편입됨에 따라 SPS 규제 문제는 단순히 검역전문가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무역상의 문제로 대두, 통상마찰의 시각에서 접근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됨.
- 따라서 앞으로 SPS 규제 문제는 기술적 문제(순수 위생·검역차원)와 통상 문제(SPS 규제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가 혼재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 것으로 예상.
→ 통상과 검역을 완비한 전문가 육성 필요.

3.2.2. 각국 SPS 규제의 국제화 및 표준화

- 국제기준과 상이한 국내 SPS 기준은 가급적 관련 국제기준에 일치시켜야 하는바 기존의 다양한 국별 SPS 조치의 국제화·표준화가 급

속히 진행될 것임.

- 이에 따라 국제기구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다수의 국가가 적용하고 있는 기준은 사실상 각국의 의무적 적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관세양허와 유사한 성격의 SPS 제도가 정착될 것임.

3.2.3. GATT상 유일한 합법적 수입(금지)제한 제도로의 정착

- 과학적 증거가 충분할 경우 국제기준보다 엄격한 SPS 규제조치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SPS 조치는 규제국가의 검역기술 수준 및 운용 여하에 따라 GATT상 적법한 수입제한 내지 금지조치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음.
- 특히 SPS 기준이란 품목, 지역, 병해충별로 엄격한 과학적 검증을 통해 세부기준이 정립되는 것인바, 실제 SPS 문제는 결국 규제하는 국가의 과학적 입증책임으로 귀속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위생 및 검역 관련 기술의 선진국으로서는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SPS 조치의 사실상 비관세장벽화가 가능해질 것임.

3.2.4. 위험평가제도의 신규 도입 내지 운용 확대

- 향후 SPS 규제의 적정성 여부는 합의문에서 객관적 지표로 제시하고 있는 위험평가제도에 근거해야 하는바 이에 따라 각국별로 병해충 및 질병에 대한 위험평가제도의 신규 도입 내지 운용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현행 검역제도상 수입금지 병해충 및 질병의 경우 이외는 수입전 위험평가가 곤란하므로 위험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용에 어려움 존재.

3.2.5. 기존 수입금지지역의 축소화

- 기존 대다수의 국가들이 수입금지 및 규제대상 지역의 기초단위를

국가 또는 도서 단위로 적용하여 온바, 병해충 미발생 또는 제한적 발생지역 개념의 인정으로 인하여 종전 수입금지로 분류된 국가내에서도 다수의 안전지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수입금지 지역의 축소)

- 지역 개념에 입각해 검역을 실시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식물검역제도의 조정이 불가피

3.2.6. 개별국가의 SPS 규제조치의 임의적 개정 곤란

- 수출국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입국의 SPS 관련 국내 법규 신설 및 개정은 사전에 SPS 위원회에 및 관련 체약국에 통보하고 협의해야 하는 의무규정으로 인하여 개별국가의 임의적 개정이 종전보다 여의치 못할 것임 .

3.2.7. 검역 관련 분쟁 확대

3.2.8. 동등성 인정 요구 급증

3.2.9. 검역규제에 대한 과학적 입증제시 요구 빈발

3.2.10. 미국 수정제안의 광범위한 반영

- 현재 미국이 운용하고 있는 SPS 국내 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시킬 경우 자칫 초래될 수도 있는 자국의 SPS 규제기준의 하향조정 가능성을 사전에 배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도가 합의문에 그대로 반영됨
- 수입국측면에서 미국은 자신들의 검역기술 우위를 최대한 활용하여 자국의 SPS 조치가 가장 무역왜곡 효과가 적은 조치임을 용이하게 밝힐 수 있고, 반대로 수출국의 입장에서 자국의 조치와 상이한 규제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수입국에게 미국조치가 가장 무역왜곡이

적은 조치로 동등성 인정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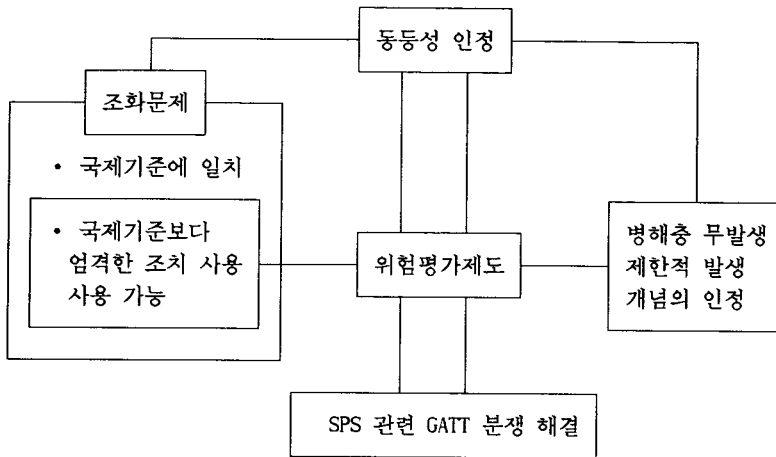
- 미국의 수정제안의 주요 내용(부록 3 참조)

4. UR 위생 및 검역분야 협상 타결의 시사점

4.1. SPS 분야 최종합의문의 함축성

- 조화 문제는 국내 기준과 국제기준과 불일치하는 경우 영향을 미칠 것임.
 - 불일치할 경우 과학적 입증 가능성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과학적 입증은 다시 국제기구가 정한 위험평가제도에 근거하여 적정 보호수준인가의 여부에 달려 있음
- 수출국의 동등성 인정 요청시에도 이에 따른 최종 인정 여부 역시 수입국의 위험평가에 근거토록 되어 있음.
- 병해충 무발생/제한적 발생의 개념 인정에 따라 무조건 금지에서 증거에 의한 제한적 금지로 바뀌게 되나 최종 수입가능 여부는 위험평가에 근거해야 함.
- 예상되는 분쟁 해결에 있어서도 과학적 증거 제시에는 위험평가에 근거한 자료 및 정보의 제시가 필수적임.
- ★ 결국 SPS가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개념들이 도입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위험평가제도」라는 방법(절차)에 의하여 실시 여부의 적법성이 판가름나게 되어 있음(그림 2-4 참조).

그림 2-4 SPS 합의문의 분석도



4.2. 우리 나라에 주는 시사점

4.2.1. 조화 문제

- 현행 국제기구의 기준, 지침, 권고와 상이한 국내 SPS 규제조치는 국제기준에 합치시키거나 또는 과학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만이 향후 계속 운용이 가능. 따라서 현행 국내 SPS 규제의 국제기준 일치 여부 조사 및 과학적 근거 규명 작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특히 현재 운용되고 있는 국내 SPS 규제 기준이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보호에 적절한 수준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실증적·과학적 재검토가 요청되고 있음.
- 그러나 현재의 우리 나라의 검역제도 특히 식물검역제도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수입금지 식물을 설정·고시하여 해당품목에 대해서는 일체 수입이 금지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만 검역을 실시하는

Negative System 체제이어서 향후 예상되는 국제기준 일치 및 동등 성인정 요청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 「조건부 수입허가제」 도입의 필요성.

- 아울러 국내 농축산물의 잔류유해물질(항생물질/합성항균제/성장촉진제)에 대한 허용기준이 일반적으로 국제기준보다 높은바 이에 대한 과학적 정당성 입증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임
 - 국제기준과 다르거나 국제기준이 없는 경우,
 - i) 국제기준으로 대체,
 - ii) 과학적 근거 확보 여부를 결정
- 다만 국제기준과의 조화와 관련하여 동식물검역분야의 경우 상당 부분 아직도 국제기준이 존재하고 있지 않는바 새로운 국제기준의 설정이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고 동시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함
 - 국제기준 신규 제정시 우리의 입장 반영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 필요(예; IPPC, OIE의 전문가회의 지속적 참가)

4.2.2. 동등성 인정 문제

- 특정 보호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국별로 다양한 SPS 규제조치가 있을 수 있으나, 각 조치들이 모두 동일한 보호수준을 달성할 수 있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될 경우, 해당조치는 모두 동등한 것으로 인정해야 함.
 - 수입국으로서는 이에 대한 과학적 대응이 미진할 경우 수출국의 SPS 조치를 자국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특히 과거 수입국의 일방적 SPS 규제로 수입을 제한해 왔던 관행은 더 이상 불가능해짐.
- 따라서 향후 우리의 수입금지 농축산물에 대한 수출국들의 동등성 인정 요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과학적 증거 제시가 불가능할 경우 기존 우리의 수입금지 조치는 더 이상 유지가 곤

란하게 됨.

- 현재도 SPS 규제를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품목들에 대해 많은 국가로부터 다양한 양자협상이 계속 요청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과일류/축산물에 대한 수입허가 요청이 급증)

- 한편 동등성 인정에 대한 양자/다자협상시 수입국의 요청에 의거 수출국의 SPS 조치 현황 및 관련 검사방법, 절차 등 세부 관련 자료의 입수 및 검토가 가능해짐에 따라 장기적으로 검역 관련 고급기술의 이전이라는 긍정적 효과도 발생.

4.2.3. 지역별 SPS 규제 실시

- 현재 우리 나라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수입금지지역 및 동식물의 기초단위를 국가 또는 도서단위로 하고 있어, 병해충 미발생/제한적 발생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수입금지지역의 세분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동일 국가내에서도 다수의 병해충 안전지역이 새롭게 정립될 것임.
- 이에 따라 기존 수입금지국가(지역)으로 지정하여 그곳에서 생산한 또는 그곳을 경유한 기주품목에 대해 수입을 금지해 왔던 관행도 동일한 국가일지라도 해당 국가내 어느 지역에서 생산되었느냐에 따라 종전과 같은 수입제한은 불가능할 것임.
- 따라서 기존의 수입금지지역에 대한 더욱 엄격한 구분 및 이에 따른 과학적 증거/정보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자의적으로 적용해 왔던 과거의 관행은 점차 축소.폐지시켜야 할 것으로 보임.

4.2.4. 위험평가제도 도입

- 수입국의 자의적 또는 매우 엄격한 규제조치의 시행 방지를 위해 검역규제수준의 객관적 지표를 개발하여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도

입된 위험평가제도는 SPS 합의결정문의 중추적 장치로 우리 나라에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도입이 불가피한 실정임.

- 그러나 식물검역의 경우는 현행 제도상(Negative System) 수입 금지식물(또는 지정검역물)을 제외하고는 사전 검역이 곤란한 관계로 국제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위험평가제도의 실질적 도입이 용이치 않음.
 - 구미식 Positive System으로의 제도 개선 또는 현재의 제도하에 서 일본과 같은 조건부 수입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 제기됨.
- 아울러 현재 우리 나라로서는 이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지식축적이 미흡하고 운용경험조차 없어 제반기술의 향상과 아울러 전문인력의 양성이 시급히 요청됨.
- IPPC, OIE 등 병해충 위험평가 작업단회의에 적극 참여 요망.
 - 우리의 실정에 맞는 위험평가 모델(MODEL) 수립
 - 선진국의 위험평가 모델 수집 및 분석

4.2.5. 기타

- 국내 SPS 규제의 명료성 제고 및 임의적 개정 불가.
 - GATT와 이해 당사국의 SPS 관련 정보제공요청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국내 검역 규제 및 법규, 제도, 기준의 영문화 작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
 - 수출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SPS 관련 법규의 신설 및 개정은 사전에 GATT 및 관련 당사국에게 통보하고 이를 협의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져 있는바 향후 개별국가의 임의적 개정이 종전 보다 여의치 못할 것임. 따라서 SPS 제도 개선은 UR발효 이전에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수출 농축산물에 대한 검역 개선.
 - 수출 전략품목의 교역 상대국의 수입검역요건 조사강화 및 수출

농축산물에 상대국의 병해충 위험평가제도 실시에 따른 대책 수립

- 관련 품목의 국내 병해충 분포조사 및 병해충 무발생 또는 제한적 발생의 증거 확보/수집
- 교역 상대국별 특수 고려요인 수집 및 전략 수립

제 3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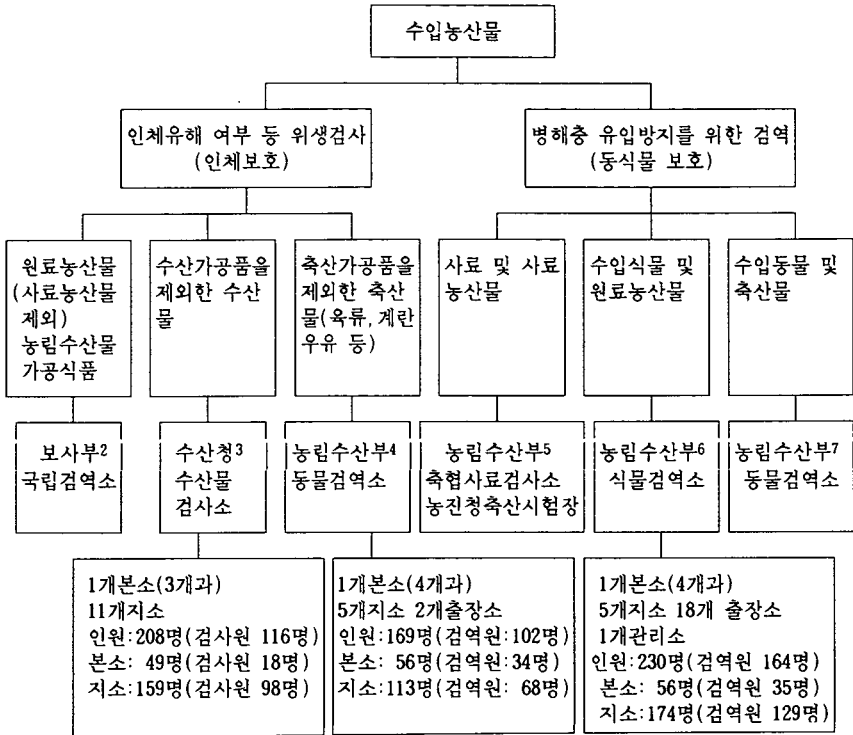
우리 나라 동식물 검역의 현황과 문제점

1. 제도 및 조직 운영

1.1. 검역체계의 중복 및 불명확(그림 3-1 참조)

- 업무 영역이 농림수산부와 보사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효율적인 검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수입 농림수산물 검역 관련 법령이 식품위생법, 가축 전염예방법, 식물방역법, 사료관리법 등으로 구분, 적용을 받게 되어 있고 이를 관리하는 부서가 달라 부처간 협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동검에서 실시하는 육류 위생검사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함으로써 보사부와 협의하여 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검역환경의 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처나 수정에 어려움 존재
 - 수산물 경우 국립검역소에서 검사의뢰가 없으면 문제되는 수산물이라도 검사 불가능.

그림 3-1 우리 나라의 동식물 검역체계



² 식품위생법 및 동시행규칙, 식품공전에 근거하여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정밀 검사 필요시 국립보건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³ 품목 전문성을 고려하여 1991년에 부산지소에 감사의뢰, 1992년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수산물검사소에 위탁검사 중이나 검사신청부터 검사증명서 발행까지 보사부에서 수행하고 수산물 검사소는 검사만하고 그 결과를 보사부에 통보함. 수입 수산물 위생기준은 보사부장관, 수출 수산물 위생기준은 농림수산부 장관이 각각 정함.

⁴ 중복 검사의 비효율성 제거를 위해 1992년부터 보사부에서 동식물검역소에 위임 및 위탁검사 의뢰로 업무 일원화(신청접수 등 검역업무 전단계를 동검에서 수행).

⁵ 사료관리법에 의해 사료의 품질검사 실시.

⁶ 식물방역법 및 동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외래병해충 유입 방지.

⁷ 가축 전염병 및 동시행령 규칙에 근거하여 가축의 전염병 유입 방지.

1.2. 국제화에 대응한 제도 정비 미흡

- GATT/UR SPS 합의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제기준과의 조화, 동등성 원칙에 따른 수출입대책, 위험평가제도 도입 및 운영, 병해충 발생지역 축소대응에 대한 제도정비가 미비
 - 우리 나라 식물검역 시스템은 모든 병해충에 대해 위험평가를 거친 후 이를 바탕으로 인간 및 동식물의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병해충만을 설정(소위 법정 경계병해충)하여 이와 관련된 일체의 농축산물의 수입을 금지시키는 Negative System임
 - 특히 UR/SPS 협상에서는 우리 나라의 검역 시스템과는 다른 Positive System의 핵심인 위험평가제도에 근거해 검역을 실시하도록 권고되고 있어 우리 나라 검역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위험평가제도의 도입방식 및 운영에 대한 준비가 미흡함
 - Negative System하에서 향후 가장 문제시되는 부분은 수입금지 품목에 대한 조건부 수입인정 문제임. 이에 대해 일본은 국제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기초할 경우 엄밀한 평가를 거쳐 조건부 수입을 확대시키는 탄력성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 나라는 국제화에 대응한 탄력적 대응이 제반 검역인력, 시설, 장비 등의 후진성으로 인해 어려운 실정에 있어 향후 국제화에 대비한 준비가 소홀한 실정임.
 - 동물검역의 경우에는 정확히 Negative System 혹은 Positive System이라고 명명하기는 힘들지만 국제화에 대비한 검역기준, 제도 등의 조화 및 과학화가 미흡함.
 - GATT/UR SPS 협상 타결 및 국제화에 대비하여 동물검역기준이나 제도 등이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나, 현재의 기준 및 제도로는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효과적 대응이 어려움.
- 한편 이번 SPS 합의안은 국제기준보다 엄격한 SPS 조치를 인정하

고 있는바 미국, EC 등을 비롯한 주요 협상대상국들은 과학적 정당성 및 객관적 근거에 기초해 각국의 적정 검역기준 설정 권리를 강조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우리 나라 동식물검역소는 전문인력 및 기술, 정보 등의 부족으로 인해 향후 UR/SPS 협상에서 과학적 객관주의에 기초한 각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제기준보다 엄격한 SPS시행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면밀한 연구를 통한 적용 가능성 검토가 미흡함.

○ 또한 UR/SPS 합의문에 따르면 수입국의 검역조치는 수출국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검역지역이 국별 개념에서 지역별 개념으로 축소됨.

- 우리 나라의 동식물검역은 국가별로 검역조치를 시행해 왔기 때문에, 향후 UR/SPS 협상 타결로 인해 지금까지 수입금지 지역으로 분류된 국가들의 지역별 검역조치 차별적용 및 검역완화 요구 증대가 예상됨.

- 그러나 현행 국별/지역별 병해충 및 질병 등에 대한 연구 부족, 정보 부재, 자료미비 등으로 향후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음.

○ UR/SPS 협상 타결에 따라 불투명하거나 비과학적으로 판단되는 검역 관련 사항에 대해 주요 교역 상대국으로부터 정보 제공 및 객관적 증거제출 등 검역 관련 자료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SPS 합의문에도 각국이 이해 당사국의 자료 요청에 대해 성실한 답변 의무와 문의처(inquiry point)설치를 규정하고 있음.

- 이외에도 수출국이 그들의 검역조치가 수입국의 SPS 조치에 의한 보호 수준과 동등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경우에 수입국은 수출국의 해당 검역조치를 자국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Principle of Equivalency)이 UR/SPS 협상 타결에 따라 적용될 것임. 따라서 향후 검역 선진기술을 보유한 농산물 수출국들의 동등성 인정 요구가 급증할 것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비책 강구가 시급한 실정임.

- 국제검역규정을 제정하는 이번 UR 협상과 같은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 입장 반영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협상 전문인력 및 검역기술 부족 등으로 인해 미흡한 실정임. 이는 국내 동식물검역 관련 기술 및 정보 등이 전반적으로 후진성을 면치 못함에 따라 국제적 공신력 확보 및 논리 입증이 부족함에 기인함. 따라서 향후 국제기준 및 규정 등을 설정할 주요 국제회의 및 협상에서 우리나라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객관적 논리개발뿐만 아니라 협상전문가의 양성이 시급히 요청됨.

1.3. 검역의 투명성 결여

- 검역 관련 업무의 폐쇄성으로 검역이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음.
 - 법 개정시 일본은 반드시 공청회를 거쳐 이익단체의 이익조정과 문제점을 수용하여 개정함으로써 법 개정시의 공정성과 검역업무의 투명성 및 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있음. 이에 반해 우리 나라는 법 개정시 검역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입법예고 절차만 거치고 공청회 과정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 의견수렴이 미흡함.
 - UR/SPS 협정에 의하면 향후 국내 법규의 신설 및 개정은 사전에 GATT 및 관련 회원국에게 통보하고 협의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잦은 법규개정이 어려워질 것임. 따라서 공청회를 통한 법규신설 및 개정으로 대내외 공정성 확보 및 잦은 임의 개정을 피해야 할 것임.

1.4. 업무의 탄력성 및 효율성 제고노력 미흡

-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수입국의 다변화, 품목의 다양화, 수입량의 증가 및 UR/SPS 협상 타결로 인해 검역 관련 업무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나 검역 관련 시설 및 장비뿐만 아니라 검역관의 절대적 부족 등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 선진국의 경우 수입급증에 따른 문제를 지역별, 품목별로 위험도를 상중하로 나누어 검역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시켜 이를 해결하고 있으나, 우리는 검역업무의 효율성 제고노력이 미흡함. 특히 업무의 효율성제고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컴퓨터화와 검역기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검역업무의 효율성 측정이나 평가가 불가능함.

1.5. 현지 검역제도 미활용

- 수송화물의 대형화추세로 인해 대량요목, 구근류, 종자 등의 수입농산물에 대한 검역은 도착지 검사만으로는 철저한 검역이 될 수 없음. 아울러 수입과실류의 경우 선도 유지를 위해 도착지에서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착지에서의 철저한 검역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출국 현지에서의 소독과 현지 검역제도가 필요함. 아울러 현지 검역제도는 도착지에서 반송폐기로 인한 무역마찰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됨.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양국의 협의가 사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인원 및 기술,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나라에서 크게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활용방안 검토가 필요함.
- 한편 검역 문제가 SPS 협상 타결로 GATT체제로 편입되어 수입금지 및 규제 대상지역이 기존의 국가단위에서 지역단위로 축소됨에 따라 예상되는 검역 관련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현지 검역은 그 중요성이 큼.

2. 인력, 시설, 장비, 기술, 정보

2.1. 전문인력의 부족 및 육성 미흡

- 검역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 축적된 전문인력의 확보임. 특히 UR/SPS에서 논의되는 모든 사항의 기초는 과학적 근거에 의한 검역조치로서 전문 인력확보 및 양성은 그 어느때보다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임. 선진국에서는 검역 관련 전공자를 선발하여 꾸준히 전문인력 육성에 노력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는 검역전문인력이 극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전문인력을 선발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미비함. 특히 식물검역소는 심각한 실정임.
 - 현재 식검의 부족인원 선발은 총무처의 공무원시험에 준하고 있어 전공자 선발이 어렵고 아울러 긴급부족인원도 남아도는 농림직 공무원(농산물 검사소, 통계소, 지도소)의 자체 이동으로 충원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검역실무 책임자급인 5급 이상 공무원의 전출입이 많고(최근 7년간 연평균 전입 4.2명, 전출 2.8명) 이로 인해 기술축적을 생명으로 하는 검역기술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음.
 - 또한 이와 같은 잦은 이동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더욱이 과거 수년간 해외연수후 귀국과 동시에 타부서로 전출됨으로써 기술인력 축적/활용이나 기술개발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 동검은 인원선발을 수의직(7급)으로 규정하고 있고, 긴급부족인원 충원시 해당인원을 특별전형으로 충원함으로써 식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함.
 - 식검의 경우 1970년 식물방역직이 폐지된 후 검역관 충원이 비

표 3-1 식물검역소의 5급 공무원 전출입 현황, 1985-92

연 도	(타기관에서)전입	(타기관으로)전출	퇴 직	비 고
1985	1	1		자체승진 2명
1986	1	3		
1987	2	2		
1988	2	2		
1989	1		1	자체승진 2명
1990	11	5		
1991	4	3		
1992	8	4	2	
계	30	20	3	

자료: 우건식, “수출입 식물검역 기술과 시설 및 제도연구,” 「선진 해외 농업기술 현황 공동연구」, 제2권, 서울대, 1992. 12.

전공 일반 농림직으로 되어 연구조사분야의 기반이 취약함. 따라서 검역의 과학적 객관성에 핵심인 병해충 분류 동정, 검역기술 개발 및 축적 등에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음.

- 현재 검역관 및 검역연구요원이 부족하여 품목별·분야별로 전문화되어 있지 못하고 대량 수입품에 한해 2명만이 검역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소량의 경우는 1인이 담당, 전담하고 있음. 외국의 경우 대량 수입품은 4-5명, 소량인 경우에는 2명이 전담하고 있으며, 아울러 품목별로도 전문화되어 있어 철저한 검역이 이루어지고 있음.

- 세계적으로 알려진 곤충만하더라도 150만종, 곰팡이 10만종, 박테리아 1600종으로 알려져 있어 외래 병해충을 동정 분류하는 데는 엄청난 전문인력이 요구되고 있으나, 이러한 전문인력 수요를 충당하고 있지 못함.

2.2. 검역 관련 시설 및 장비의 부족

○ 검역 관련 전문/전용 창고의 미비

- 선진국의 경우 각 항구와 공항에 품목별 전용창고를 가지고 있어 양륙, 검사, 소독을 일관되게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품목별로 필요한 전문시설을 완비하고 있음.
- 우리 나라의 경우는 향후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과실류 및 곡류, 목재류 검역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훈증창고, 사일로 시설, 야적장 등 품목별로 전용검역시설이 미비한 상태로 국제적 분쟁소지는 물론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음.

○ 개별 검역지소의 장비 및 시설 부족

- 현재 주요 항구 및 항만의 동식물검역지소에 대한 장비 및 시설 현대화계획이 추진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거의 대부분을 본소에 의존하고 있어 효율성과 신속성이 떨어지고 있음. 특히 검역업무의 본질상 검사를 실시하는 개별 검역지소 및 출장소에서 모든 검역업무가 마무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소의 장비 및 시설 부족이 큰 문제임.
- 동물검역 기능 강화 5개년계획으로 추진중인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 연구센터」 설치 사업이 1992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기존 공사만 되어 있어 해외 악성 전염병 연구가 본격화되고 있

표 3-2 한·일 양국간의 소독시설 비교

구 분	한 국	일 본
곡물류 벌크의 경우 포장된 경우	사일로 용량 부족으로 본선 소독, 천막 소독	전량 사일로 소독 훈증 창고 소독
청 과 물	훈증창고 없고 천막사용	전량 훈증 창고 소독 (용량 약 85천m2)

지 못함. 따라서 조속한 연구센터의 설립을 통해 해외 악성전염병 연구의 촉진, 긴급용 백신 개발 및 비축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 최근 각 지소에 컴퓨터가 설치되어 검역업무의 전산화 및 전산망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데이터 베이스 구축, 전산요원 부족 등으로 효율적 검역자료 축적, 검역업무의 효율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행정전산망 94년 완료 예정).

○ 격리 재배검사 허술

- 식물검역 중 수입 종묘·구근류는 도착지에서 즉시 검출되기 어려운 잠복 병해충(주로 바이러스) 때문에 수입 후 격리재배가 필수적 조치임(외국에서는 철저한 격리재배 실시 후 반출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는 국가관리 격리재배소가 1개소에 불과해, 개별 수입재배농가가 격리재배를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격리 관리포장이 전국에 약 1,000개소에 분산되어 있어 유해 병해충의 확산 우려가 있음.

2.3. 검역 관련 기술 및 정보 미흡

○ 검역 관련 기술수준 및 연구기능의 낙후

- 우리 나라의 검역기술이 그동안 많은 발전을 이룩한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육안검사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 철저한 검역 및 품목별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임.
- 외국의 경우는 역종별, 품목별, 분야별 전문 검역기술 및 연구기능이 체계적으로 설립되어 있음.
- 병해충 발견시 소독처리약제로 주로 쓰이는 약제는 MB(Methyle Bromide)인데, MB는 오존층 파괴물질로 2010년까지 사용 중지하기로 합의되어 있는 상태임. 따라서 대체 소독제 개발도 필요함. 선진국은 이에 대비해 새로운 소독법(저온소독, 중열소독, 고·저주파 등을 이용한 침단소독법)을 개발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

와 같은 소독기술개발을 통해 수입금지해제를 요구해 오고 있음. 그러나 선진국의 소독개발 기술에 대응할 기술수준이 미흡하여 이에 대한 분석 및 대응이 미흡함.

- 일본의 경우는 새로운 검역 및 소독방법을 개발, 시험하여 농림 수산물 수출시장 확대에 노력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는 수출농산물 소독기술개발 부족으로 수출지원책이 미흡함.

○ 검역 관련 정보수집 및 분석기능 미흡

- 효율적인 검역을 위해서는 상대 교역국의 병해충 발생 및 분포 상황, 방제 실태 상황 등 각종 검역 관련 정보를 신속히 수집하여 이에 대처해야 함. 또한 수출의 경우도 농산물 수출국에 대한 농업생산 사정, 병해충 분포 및 발생, 소독방법의 개발 등 각종 정보를 신속히 입수해야 함. 그러나 각국에 대한 정보 수집 능력이 부족하고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도 미흡하여 검역상 발생할 수 있는 마찰과 국제분쟁에 대한 대응이 미흡함.

3. 검역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3.1 기술협력체계 미흡

- 검역업무는 병해충의 분류동정, 방제기술의 정립, 농약의 잔류성 검정, 환경공해 등 여러 분야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바 각 분야별로 고도의 전문인력이 필요함. 따라서 여러 유관기관의 적극적 협조와 지원이 필요함(예; 대학으로부터 학문적 지원, 농업관련 연구소로부터의 관련 분야 새기술 개발협력 등).

- 일본은 효과적 검역 시행을 위해 쓰구바 농업연구소와 긴밀한 협조를 맺고 있으나, 우리 나라는 관계 기관 정기협의회 조차 구성되지 못하여, 중요한 현안에 적절히 적응하지 못하고 있음.

- 동검의 경우 국립 동물검역소, 가축위생연구소 및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의 업무연계 및 협조체계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새로 개발하였거나 선진 외국에서 입수한 선진 수의기술의 신속한 보급 및 활용 미흡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가 미흡함.
- 식검의 경우 국립식물 검역소, 진흥청 농업기술연구소, 학계와 유기적 협조가 미흡하여 효율적인 업무협조가 안되고 있음.
- 그리고 현재 구성되어 있는 검역심의위원회조차도 필요에 따라 열리는 비상설기관이며, 더욱이 유관기관과의 또는 정례협의체 조차 신설되어 있지 못하고 필요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협의체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학계에서도 검역에 대한 인식이 낮아 해외병해충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가 거의 없어, 해외 병해충에 대한 생리적 특성, 기주식물, 우리 나라에 미칠 영향, 진단방법, 방제방법 등의 지표선정 등에 대한 기준이 미흡함.

3.2. 검역 병해충의 예찰/공조체계 미비

- 국경을 경계로 해외병해충 침입을 방지하는 것이 검역이라면, 그후의 유해병해충의 조기발견 및 방제 또한 검역 못지 않게 중요함. 향후 농축산물 수입개방의 폭이 점차 커짐에 따라 외래 병해충 침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국경검역과 관련하여 예찰체계가 매우 중요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래 병해충 조기발견/조기방제 체계가 효과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음.
 - 주로 진흥청에서 국내 농작물 병해충 및 전염병 발생을 경계하기 위해 예찰작업을 하고 있어 외래 병해충 및 동물 전염병에 대한 예찰, 조기방제 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3.3. 세관과의 공조체계 미흡

- 운송수단의 발달, 해외여행객의 증가, 교포의 귀국방문 증가 등으로

여행객의 휴대물품을 통한 병해충 침입 위험성이 높아졌으나 외국 처럼 동식물검역에 대한 철저한 신고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세관과의 협조가 매우 중요함.

- 그러나 세관과의 협조체제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검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및 대국민 홍보마저 부족하여 해외 병해충 침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제 4 장

향후 동식물검역의 개선방향

1. 인식 전환

- 수입제한 조치의 일환으로서가 아니라 검역 자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측면에서 연구가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수입제한은 철저한 검역을 실시함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
- 검역은 공공재로서 그 중요성 및 역할 재인식 필요

1.1. 국민건강의 보호차원에서의 동식물 검역

- 우리 나라의 경우 식품의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아 사실상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식품의 거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민건강 및 안전 문제를 전적으로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특히 미국 등 선진국에서 수확 후 저장 목적으로 살균·살충 등의 일반 농약의 사용(소위 Post-Harvest)이 인정되고 있음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축산물에 성장촉진 및 질병예방, 치료용의 광

범위한 항생물질 사용이 증가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의 검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음.

1.2. 국내 동식물보호와 국토보전(환경/생태계 보존) 차원의 동식물검역

- 악성 가축 전염병과 유해병해충 등이 일단 국내에 유입되면 이를 완전히 박멸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로 인한 매년의 방제비용 또한 엄청나게 소요됨.
- 바퀴벌레(일반 가정), 오제스키병(돼지), 솔잎혹파리(소나무), 흰불나방(가로수/활엽수), 밤나무혹벌(재래종 밤나무), 벼물바구미, 흰빛 마름병 등 외래 가축 전염병 및 유해 병충해의 피해는 매년 수백억에 이름. 예컨대 식물의 경우 침입 외래 해충을 보면 아래 <표 4-1>과 같음.
 - 작물생산에서 병해충 및 잡초에 의한 세계적인 감수율은 33.7%에 달하고 이 중 해충에 대한 감수가 12.3%, 병원균에 의한 감수가 11.8%, 그리고 잡초에 의한 감수가 9.8%로 병해충에 의한 영향이 큼.
 - 미국의 경우 지중해 광대파리(주로 과실류에 기주)의 유입으로 박멸을 위해 1억 달러 이상의 경비와 노력을 들였으나, 현재까지도 완전 박멸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이로 인해 1988년 캘리포니아 산 과실류 수출이 동결되어 수천억의 피해를 입은 바 있음.
- 마약이나 금은 보석의 밀수입은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나 여행자들이 휴대 밀반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외래 병해충 및 가축 질병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짙음. 실제로 나타나는 피해 정도를 놓고 볼 때 외래 병해충 및 가축질병 침입은 마약이나 금은 보석 밀수보다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동식물검역에 대한 국민 모두의 새로운 인식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검역은 공공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바 이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여 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국민후생 및 해당 산업 보호에 기여해 나가야 할 것임.

표 4-1 우리 나라에 침입한 해충의 종류

침입해충	피해식물	침입경로	침입연대 또는 발전연대
사과면충	사과	미국, 유럽	1910년
포도뿌리혹벌레	포도	미국	1920년
화살까지벌레	굴	중국, 남부	?
완두콩바구미	완두	미국, 일본	1920년 후반
솔잎혹파리	소나무	일본	1929년
이세리아까지벌레	굴	미국, 호주	?
잠두콩바구미	잠두	영국, 미국	?
흰불나방	수목	미국 → 일본 미국 → 한국	1958년 ?
감자나방	감자, 기타가지과식물		1968년
줄알락명나방	저장곡물, 가공식품	일본	?
흰개미	목재	일본	?
바퀴류	옥내해충	일본, 남방	?
루비까지벌레	굴	열대지방	?
애집개미	옥내해충	일본	?
온실가루이	온실, 하우스식물		1977년 - 1981년
다수의 곡물해충	곡물	각국	?
뿌리용애	마늘, 구근	각국	?
가루좀벌레	저곡	미주	1975년
벼물바구미	벼, 화본과잡초	일본	1988년
바나나바구미	바나나	일본(?)	1988년

자료: 안신환, “국제검역질서 재편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1992.

2. 제도 및 조직운영에 대한 개선방향

- 현행 검역제도 및 조직운영의 개선방향은 UR/SPS에 대응할 수 있고 국내 농업보호 및 검역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함.

2.1. 현행 동식물 검역제도의 개선

- 현행 우리 나라의 식물검역제도(Negative System: 대륙법 계통의 법체계로 일본 한국 등에서 사용)와 구미식 식물검역제도(Positive System: 영미법 계통의 법체계로 미국·캐나다·호주 등에서 사용) 간의 장단점을 비교·검토하여 식물검역제도 개선의 틀을 수립하고자 함(표 4-2 참조).
- 양제도는 장단점을 지니고 있어 어느 제도가 더 좋다고 할 수는 없고 중요한 것은 제도가 아니라 얼마나 잘 운용하느냐의 문제임. 다만 GATT/UR SPS의 합의 결정문에 대응하기는 Positive System이 유리한 것으로 보임. 왜냐하면 SPS 협상에서 권장하는 위험평가 제도의 도입이 용이하기 때문임.
- 그러나 현행 Negative System에서 Positive System으로 전환하는데 따른 문제점으로,
 - ① 과학적·기술적 지식 및 자료축적 미비, 전문인력 부족
 - ② 수입 해제했던 품목을 수입금지로 전환한 후 위험평가 후 해제 가능성에 따른 대외통상마찰 가능성
 - ③ 기존의 법체계 및 인력체계 등 식물검역전반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 등이 지적될 수 있음.
- 따라서 현행 Negative System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 제도를 얼마나 잘 보완하여 운용하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임.

- 현재 도입 논란이 되고 있는 수입허가제 운영은 제한된 범위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수입금지지역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서의 징수 및 수입신고제를 보강할 필요가 있음.

표 4-2 Negative System과 Positive System의 비교

Negative System		Positive System	
장 점	단 점	장 점	단 점
• 수입금지품목과 지역만을 고시함으로써 수입검역 운용이 용이	• GATT/UR S PS 합의결정문에 따라 도입이 불가피한 위험평가제도를 실질적으로 도입하여 운용하는데 용이치 못함	전품목, 전세계를 규제 품목/지역으로 한 후 위험평가에 따라 금지 품목/지역을 해제함으로써 철저한 검역이 될 수 있음(수입허가제 운용 가능)	• 국내 병해충의 분포 조사가 완료되어야 하고, 해외 병해충의 특성, 분포, 기주식물, 방제방법, 경제적 중요도 등 과학적, 기술적 지식 축적과 이를 평가하는 데 많은 시간 및 전문인력이 있어야 가능
• 본래 모든 병해충의 위험평가를 한 후 수입금지 품목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과학적·기술적 축적 없이도 선진국의 선례에 따라 수입금지품목을 선정할 수 있는 장점	• 수입금지 품목에 대해서만 위험평가제도가 적용될 수 있어 위험평가제도의 활용 폭이 좁고 조건부 수입허가를 확대할 수 밖에 없는 단점이 있음	• 위험평가과정에서 국가의 필요성 및 국익의 상충도에 따라 수입금지품목을 해제해 나갈 수 있는 탄력성이 있음	• 금지 병해충의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수입금지 품목에 대해 수출국으로부터 계속적인 이의 제기를 받을 수 있음
• 금지병해충을 법적 근거에 기초함으로써 투명성이 높아 외국으로부터의 이의제기에 대응 용이			

- 특히 GATT/UR SPS 합의의 증추장치인 위험평가제도의 실질적 도입에 관한 준비가 필요함.
- Negative System하에서 UR/SPS 타결 후 식검의 중요 문제는 조건부 수입허가제의 효율적 운용방안 마련임.
 - UR/SPS의 국제기준 일치 및 동등성 인정 요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종전과는 달리 일본처럼 이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임(현재 한국의 조건부 수입허가 품목은 1국 1개품목(미국의 버찌)에 국한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수입금지 품목이라도 일정한 검역 조건을 만족할 경우 수입을 인정하고 있어, 현재 14개국 26개 품목이 수입해제되었고 이들 국가에 파견된 검역관만도 30-40명에 달하고 있음.
 - 참고로 일본의 조건부 수입해제는 아래와 같음.

<조건부 수입금지 해제 조건>

- ① 병해충 방제가 철저히 되고 있는 지역에서 생산된 것
- ② 수출국측이 확립하고 일본측이 기술적 관점에서 인정한 방법에 의해 확실하게 소독이 행해진 것
- ③ 수출국정부가 행한 소독 및 수출검사는 일본에서 파견한 식물검역관이 반드시 입회·확인한 것에 한함
- ④ 소독·검사 후에 재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의 방역조치가 취해진 것
- ⑤ 도착지가 일본이라는 일정한 표시가 부착된 것
- ⑥ 수출국 정부 식물검역기관이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에 현지 파견 일본 식물방역관의 서명이 있는 것

<조건부 수입금지 해제 과정>

- ① 과학적 data(완전살충 data 등)의 송부-해금요청국 정부기관
- ② 과학적 data의 평가 - 일본 식검당국
- ③ 일본 전문가에 의한 현지 조사 - 일본 식검당국

- ④ 수출국과 일본 정부간의 2국간 협의 - 수출국 정부기관 및 일본 식검당국
 - ⑤ 일본내에서의 공청회
 - ⑥ 관련 규정 개정
 - ⑦ 수입개시-일본측 식물방역관의 현지 감독하에 수입개시
 - ⑧ 일본 도착 후 검사에서 만일 대상 병해충이 발견되면 전량 폐기 또는 반송. 또한 그 원인이 규명되고 대책이 세워질 때까지는 수출을 허가하지 않음.
- 이를 통해 선진검역 및 소독기술을 습득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들 기술을 수출농산물에 활용하여 일본처럼 수출시장 확대에 기여해 나가야 할 것임. 특히 UR/SPS에서 논의되는 동등성 원칙에 의해 향후 수출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수출검역기술 강화가 필요함.
- 일본은 조건부 수입 해제를 역으로 수출에 이용하여 수출품목을 확대하고 있음. 이러한 사례로는 현재 미국으로 수출하는 밀감 및 일본배, 호주에 수출하는 20세기 배, EC에 수출하는 분제류가 있으며 수출농산물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 검역 기술 개발에 노력하고 있음.
 - 호주는 농림수산업에서 수출의 비중이 높아 수출검역 기술을 높여 수입국에 대한 인식제고와 비용절감에 노력하고 있음.

2.2. 검역소 통폐합 / 「검역청」 설립 문제

- 보사부 산하 검역소와 농림수산부 산하 검역소를 통폐합하여 검역청을 설립할 경우 각 부처간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장비 및 시설의 공동이용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업무영역이 점점 전문화, 세분화되어 가는 추세에 비추어 적당하지 못하고, 선진국의 경우에도 각각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음.

- 특히 UR/SPS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과학적 근거주의에 의한 검역 수행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각 검역소를 전문화하는 쪽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임. 따라서 기존의 운영체계를 유지하되 행정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동식검을 분리운영하되 두 기관의 업무 협조 및 UR/SPS에 대응하고 대외업무에 대한 위상제고를 고려하여 농림수산부내에 검역국을 신설하는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3. 업무영역의 일원화

- 동검에서 실시하는 육류 위생검사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하도록 함으로써 보사부와 협의하여 식품위생법을 개정하여야 하므로 검역환경의 변화에 신속한 대처나 수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육류 부분을 식품 위생법에서 분리해 축산물 위생처리법에 근거 규정을 두도록 해야 할 것임.
 - 비교적 동검은 전문인력과 첨단분석 장비가 갖추어져 있음. 따라서 동검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축산물 위생처리법을 보완 개정하여 식품위생법을 대신토록함으로써 축산물 위생검사와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임.
- 수산물검역도 축산물처럼 그 특수성을 인정하여 수산청 수산물검사로 검사 업무 일원화 필요.

2.4. 행정체계 정비

- 향후 UR/SPS의 과학적 증거에 근거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전문 연구 인력임. 따라서 연구인력을 검역소 내에 새로 만드는 방안과 기존의 연구인력(동검의 경우 농촌진흥청 산하 가축위생연구소)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구분될 수 있음.
- 그러나 현재 식검은 식물검역강화 5개년 계획(안)에서 연구인력을 검역소내에 새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동검은 기존

연구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각각 추진하고 있음.

- UR/SPS에 대응하고 향후 검역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효과적인 방안은 후자(기존의 연구인력을 활용하는 방안)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후자의 방안을 추진할 경우 동검은,

- ① 농촌진흥청 산하 가축위생연구소를 농림수산부 산하로 개편하여 동검과 원활한 업무협조체제로 전환 필요.
- ② 향후 중요성이 높아질 예찰 및 방역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 행정기관인 가축위생 시험소(지소포함)를 가축위생연구소와 연계토록 국가기관으로 전환하여 일관된 협조체제 구축(인력관리 및 예산운용 포함).

	연구인력을 검역소 내에 신설하는 방안	기존의 연구인력을 활용하는 방안
장점	① 검역업무의 효율성 제고 가능 ② 자체인력의 교육훈련의 용이성	① 기존의 연구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 단기간에 전문인력 확보 ② 향후 수입개방 확대 및 SPS 협상으로 해외 악성 가축질병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비한 예찰 및 방역에 효율적 대응 가능 ③ 검역과 연구를 분리하여 각분야 전문화 ④ UR/SPS의 과학적 근거주의에 대한 효율적 대응 가능
단점	① 크게 부족한 검역관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 현상황하에 연구인력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예산확보 지난 ② 기존에 없는 연구직 신설의 어려움	① 양기관(검역과 연구)간의 업무협조 여부에 따라 효율성 상이

- 식검(농림직)은 농촌진흥청 산하 농업기술연구소의 일부과(연구직)와 연관되어 있지만 직종의 차이로 양기관간 교류가 거의 없었고 (동검과 가축위생연구소는 모두 수의직으로 교류가 상대적으로 많았음) 동검에 비해 식검이 다루어야 하는 품목 및 병해충의 다양성으로 후자(기존 연구인력을 활용하는 방안) 방안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식검의 입장에서 2가지 방안을 다시 검토하고자 함.

- 전자(연구인력을 검역소내에 새로 만드는 방안)의 경우

- ① 외래 병해충 연구소 설립
- ② 연구직 신설
- ③ 예찰 및 방제를 위해 농촌진흥청 산하 연구소와 긴밀한 업무 체제 협조를 강화할 수 있는 조치 마련
- ④ ①과 ②를 위해 예산지원과 연구직 신설에 따른 총무처 공무원 채용기준 변경 필요

- 후자(기존 연구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의 경우

- ① 농촌진흥청 산하 농약연구소와 농업기술연구소(곤충 병리 등 식물검역 관련)를 농림수산부 산하(가축위생연구소와 합쳐 하나의 연구소로 설립)로 개편하되 지금까지 업무교류가 없었던 점에 미루어 국내 병해충 업무외에 추가로 외래 병해충 연구 기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개편.
- ② 향후 중요해질 예찰 및 방제 강화를 위해 진흥청과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가 필요함.

2.5. UR/SPS 협상 타결에 따른 대응

- 이미 지적한 것처럼 UR/SPS 합의로 국제기준이 없는 경우 이의 설정을 위해 관련 국제기구의 활발한 활동이 예상되고 있는바 우리나라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우리의 입장표시와 논리개발 및 참여가 필요함. 또한 향후 국제검역 관련 기구 및 회의에서 국익을 제

고하기 위한 검역선진화 방안이 총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시점으로 판단됨.

- UR/SPS에 따라 수출국의 병해충 무발생 또는 제한적 발생증거 제시를 통한 검역완화 및 철폐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요 수출국의 지역별 병해충 및 질병에 대한 정보수집 및 지리적 생태학적 조사연구 등 지역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함.
- UR/SPS 협상에서 인정 가능성이 큰 과학적 근거주의에 입각한 각국의 더욱 엄격한 SPS 조치 시행을 위해 주요 품목별 식품소비 패턴 등을 고려한 우리 나라의 과학적/객관적 검역기준 마련이 필요함. 이를 위해 보사부 동식물검역소(식품위생), 학계, 관련 연구소 등과 공동으로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아국의 특수성에 맞는 검역기준의 마련과 객관화가 필요함.
- 향후 SPS의 요구에 따라 국제협력 아국 동식물검역의 객관적 입증 및 정보 제공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문부서의 신설 및 확충이 필요 하며, 검역분쟁 및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이 필요함.
- 국제무역사무국(OIE) 국제식물검역기구(IPPC) 등 국제기구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검역 및 위생조건을 국가별, 품목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고 특히 국내 검역 기준도 국제기준에 조화하도록 개정하여 수출입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임. 또한 국제기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OIE 및 IPPC의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아직 합의 안된 국제기준 등에 아국의 입장을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야 할 것임.

2.6. 검역의 기본원칙에 충실/공청회 도입

- SPS 합의문의 골격은 건전한 생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외래 병해충 유입 및 만연 방지에 근거하고 있음(SPS 본래 목적 이외의 수단으로 사용금지).
- 따라서 제도 및 규정개정 및 제정시 기본원칙에 충실해야 할 것임. 이를 통해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고 업무의 투명성 객관성을 높여

야 할 것임. 특히 일본처럼 법 개정시 공청회를 통해 갈등의 소지를 없애고 잦은 법 개정의 문제(SPS 협의 초안: 개정시 통보)을 피할 수 있으며, 대 국민 인식 제고도 가능.

2.7. 시대 변천에 맞는 검역조치 강구

○ 현지 검역 등 예방검역 확대 필요

-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UR/SPS 합의문에 따르면 기존 수입 금지 지역의 축소화와 검역 병해충 개념의 축소로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 수입 증가가 예상됨. 따라서 외래 병해충 및 가축질병 침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예방검역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현행 동식물 검역은 도착지 검사가 대부분이나 화물의 대형화·다양화로 도착지 검사의 한계성, 도착 후 불합격 판정에 따른 교역 상대국과의 마찰 가능성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이를 위해 정기적 수입, 병해충 발견빈도가 높은 품목은 소독 후 수입하고 정기적으로 대량 수입, 확실한 소독 방법이 없는 경우 현지 검역을 확대함. 예컨대 식물검역의 경우 아주까리, 타피오카, 한약재 등 일부 품목을 시험적으로 현지 소독 후 수입해 본 결과, 성과가 좋게 나타나고 있어 대상품목의 확대가 요청됨.
- 일본의 경우 현지 검역의 조건을 보면

- ① 안정적으로 수입되는 다량 물품
- ② 동system를 도입한후에는 현지 검역에 의해서만 수출될 것
- ③ 검역관 파견비용은 수출국에서 부담할 것
- ④ 현재 수입물품에 병해충이 발견될 확률이 낮을 것

등으로 되어 있어, 이를 참고로 우리 나라도 현지 검역을 확대해 나아가야 할 것임. 이를 위해 국내 업무와는 다른 대외업무능력 제고가 요청됨.

○ 식물검역의 경우 조건부 수입허용에 대한 대비체제 강구

표 4-3 국별 조건부 수입요청 내용

국 가	품 목	처 리 조 건	금 지 사 유	수입자유화 연 도
미 국	파 파 야 호 두 소나무제재목	증 열 처 리 M.B 혼 중 고열건조(KD)	Medfly, OFF, MF 코드린 나방 소나무재선충	1989 1991 1977
칠 레	포 도	현지공동검역 및 저온처리	Medfly	-
대 만	망 고 여 지 풍강오렌지	증 열 처 리 증열+저온처리 저 온 처 리	OFF, MF OFF OFF	1990 1993 -
필 리 핀	망 고	증 열 처 리	OFF, MF	1990
태 국	망 고	증 열 처 리	OFF, MF	1990
호 주	감 굴 류	저 온 처 리	Medfly, OFF, 퀸즐랜드과실파리	-
	사 과	저온+ MB혼중	Medfly, OFF, 퀸즐랜드과실파리	-
뉴질랜드	양 벚 사 과	M.B 혼중 M.B 혼중	코드린 나방 코드린 나방	1985 -
스 페 인	레 몬 자 몽	저 온 처 리 저 온 처 리	Medfly Medfly	1984 1984
캐 나 다	양 벚	(MB 혼중)	코드린 나방	1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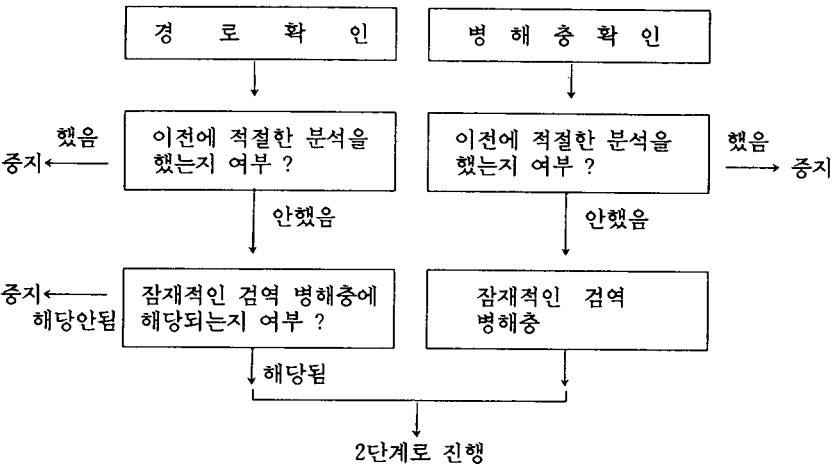
총 9개국 : 11개 품목

주: OFF(Oriental Fruit Fly), MF(Melon F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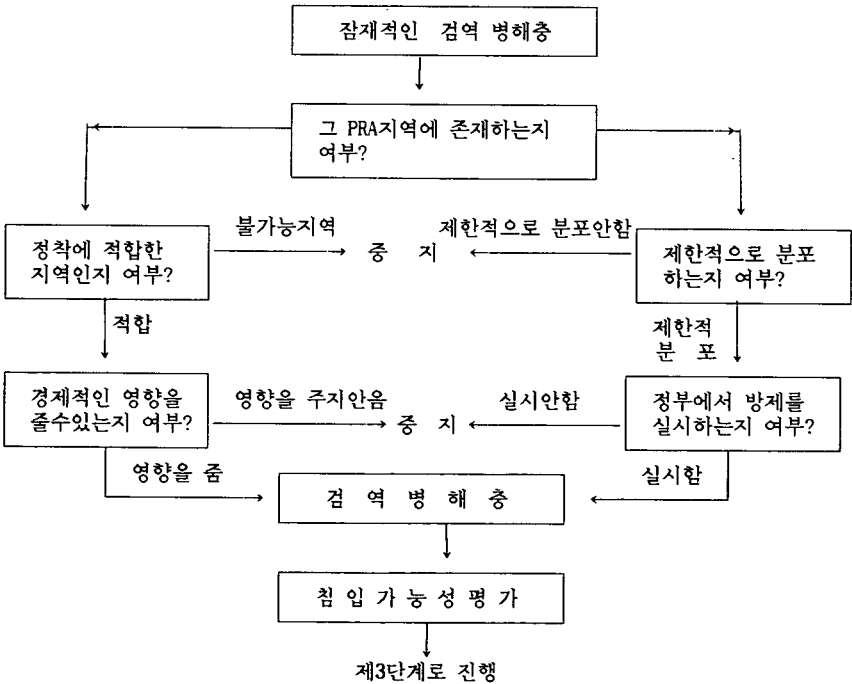
자료: 안신환, “국제검역질서 재편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1992.

-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수출국은 효과적인 소독방법을 개발하여 조건부 수입을 요구하고 있음(9개국 11품목).
 - UR이 타결될 경우 동등성 인정 원칙에 따라 이에 대한 요구가 급증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조건부 수입 허용 조치는 관계국과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협의 절충하고 장기간의 검역관 해외파견, 현지 검역관과의 연락 조정 등 종래의 검역업무와는 지극히 이질적인 대외적 부분이 많다는 특징이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준비와 더불어 학계 및 연구기관과 협조하여 상대국의 중요 병해충 발생 정보를 종합 분석하고 소독처리, 살충 효과 검증 등 과학적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위험평가제도 운영에 대한 대비체제 강구
- 국제기구(FAO)가 제시한 식물 병해충 위험평가제도는 위험분석 절차 착수단계, 병해충 위험평가단계, 병해충 위험관리 등 3단계로 구성됨.
 - 병해충 위험평가 착수단계(1단계):
 - ① 검역 병해충의 침입 및 전파 가능한 경로를 확인(indentification)함. 예컨대 새로운 상품 또는 새로운 원산지로부터 국제무역이 시작될 경우 위험평가제도 1단계는 수입허가의 요청 또는 상품의 무역 시작으로 개시됨. 또는 외래 병해충 감염으로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위험평가제도의 1단계가 개시됨.
 - ② 1단계가 끝날 때 병해충은 잠재적인 검역 병해충(단독으로 또는 어떤 경로와 연관되어) 여부가 확인됨.
 - 병해충위험 평가(2단계):
 - 1단계의 잠재적 검역 병해충이 검역 병해충의 자격 기준에 부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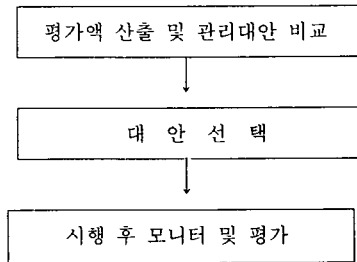
병해충 위험분석(제1단계: 착수단계)



병해충 위험분석(제2단계: 평가단계)



병해충 위험분석(제3단계: 관리단계)



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침입 가능성을 평가함.

- ① 검역 병해충에 대한 기준: 잠재적인 경제적 중요성이 있으며 아직 존재하지 않는 병해충, 그리고 제한적으로 분포하면서 정부에 의해 공식방제가 실시되고 있는 병해충
- ② 경제적 중요성에 대한 기준: 정착 가능성, 정착후 전파 가능성, 잠재적인 경제적 중요성
- ③ 유입 가능성 검토

병해충 위험관리(3단계):

병해충 위험평가(2단계)에서 이미 수집된 정보를 기초로 설정

- ① 위험관리대안(options) 설정
- ② 대안의 효력 및 영향평가

위험평가 절차의 문서화: 위험평가는 분쟁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문서화되어야 함(해당결정을 내리기 위해 사용한 모든 자료가 포함됨).

이상에서 간단히 언급한 위험평가제도는 복잡하고 관련 정보 및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올해 식검고시(제93-2호)에 의해 제시된 병해충 위험도 평가는 초보적이어서 선진국 및 국제기구의 평가 모델을 참고로 보완하여야 할 것임.

또한 위험평가 2단계(평가)에서 검역 병해충 여부 결정시 검역

병해충의 개념 도입 필요.

- 필요 이유:

대상 검역 병해충(병해충 분포 상황, 경제적 중요성, 공식적 방제 실시 여부; ① 미분포 경제적 중요성, ② 제한적 분포, 경제적 중요성, 공식방제실시)의 범위가 축소되었기 때문임. 아울러 주요국의 검역 관련 자료 및 정보 축적, 전문인력 양성, 관계 기관협조를 통해 위험평가제도 기반 마련 및 기술축적이 필요함.

○ 검역의 효율성 제고

- 수입국 다변화, 품목다양화, 수입량 증가에 대응해 검역관 증원과 더불어 검역의 효율성 제고 필요. 특히 UR/SPS에 의해 수입 금지지역이 축소됨에 따라 수입국 및 수입품목이 더욱 다양화되고 수입물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검역의 효율성 제고는 어느때보다도 중요성이 큼.
- 선진국에서는 검역의 효율성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데 일본은 수입위생 조건(상대국별, 시기별, 품목별)을 설정, 운영함으로써 검역 차별화로 검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호주도 수입농산물, 수입식품을 유해 정도에 따라 고위험식품, 중위험식품, 저위험식품으로 분류하여 검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 예컨대 일본의 경우 상대국내 또는 생산농장의 일정 기간 가축 전염병 무발생 증명, 수출상품에 대한 질병검사방법 및 기준, 수송 및 소독 방법에 따라 검역 규정을 차별화하고 있음.

국별	한국산 돈육: 통관전 100% 검사
	미국산 돈육: 통관전 10%만 검사
	덴마크산 돈육: 통관 후 유통과정에 샘플조사
시기별	비수기에는 전량 검사 등 검사 강화
	성수기에는 검사 완화

◦ 호주의 경우 수입 농산물·식품은 유해한 정도에 따라 「고위험 식품」, 「중위험식품」, 「저위험식품」의 3가지로 분류함과 아울러 검사의 회수를 위험의 정도(고, 중, 저) 및 해외제조원의 과거 수입기록에 의거 미리 결정함. 「고위험」으로 분류된 식품에 대해서는 수출원의 제조업자가 신규 및 과거의 호주기 준에 불합격된 것이 수입된 경우로 수입할 때 마다 검사를 실시하되, 동일 제조업자의 제품이 5회연속 검사에 합격하면 그 이후는 4회마다 한번의 검사로 끝냄. 단 도중의 검사에서 불합격할 경우에는 수입할때마다 재검사대상이 되며 「저위험」으로 분류된 식품은 5-10%의 무작위추출(Random)로서 검사를 실시함.

- 특히 일본은 50년째 제정된 검역기준으로는 현재의 증가하는 수입물량을 현인원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현실에 맞게 샘플 검사를 5-11단계로 나누어 검사수량을 축소해 나가고 있음.
- 이상과 같이 검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data base 구축으로 검역정보를 축적하고 전문인력의 육성이 필요함.

○ 기타

- 수입국 다변화, 품목 다양화, 육종소재로서 유전자원 도입 증가, 컨테이너 화물 급증 가능성(① 포장비용 절감, ② 수송기간 단축, ③ 화물손상 감소, ④ 일괄 수송 가능, ⑤ 하역기간 단축, 하역경비 절감, ⑥ 선박 가동률 향상)에 따라 각 품목별 검역요령이 마련되어야 함.
- 폐기처분 위반시 벌금부과 등 각종 법령을 현실화하고 수입금지 품목의 휴대입국자에 대한 벌금 부과(법에 의한 것보다 현장에서 벌금부과) 등 검역기능 강화 필요.

3. 전문인력 충원 및 육성, 시설 및 장비 확충

3.1. 전문인력 선발 및 인원 확충

- 동점의 인원선발은 수의사(7급으로 채용)로 한정하고 있어 문제가 없으나 식검은 일본처럼 농업직 공무원(9급으로 채용) 시험후 곧바로 검역관으로 임용되고 있어 전문인력선발이 어려움. 그러나 일본은 합격자 중 농업계 졸업자를 선발하고 대졸은 1년, 전문대졸은 2-3년, 고졸은 4년동안 검역실무를 익힌 다음 검역관시험에 합격한 후 임용함.
- 미국의 경우는 대학 졸업자의 졸업장, 성적증명서, 개인활동기록부 등 재반인적 사항을 보고 농업계 전공자를 연방정부 대민봉사와(Civil Service Commission)를 통해 채용함.
- 호주의 경우는 농과대학 졸업자로 곤충학, 선충학, 식물병리학, 바이러스학, 농기계학 전공자를 서류전형과 인터뷰로 선발하고 있음.
- 우리 나라도 미국 호주처럼 해당 전공자를 선발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일본처럼 선발 후 일정 기간의 검역실무 종사 후 임용하는 방법 필요. 특히 식검의 경우 다른 기관의 농림직에서 전입하는 것은 중지되어야 할 것임.
- 현재 폭증하는 검역 수요를 인원 부족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와 있음. 따라서 동식물검역관 부족으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인원 확충이 절대 필요함.
 - 식물검역요원 1인당 검역 건수: 일본 207건 한국 570건으로 일본의 2.7배.
 - 동물검역요원 1인당 하루 평균 동물 13마리, 벌 1.3통, 축산물

20.8톤씩을 검역한 셈임.

3.2. 전문인력 육성

- 향후 UR/SPS의 과학적 증거주의에 입각한 투명성 보장, 위험평가 제도, SPS 관련 분쟁처리에 관건은 전문인력과 관련 첨단장비임. 관련 첨단 장비는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예산만 확보되면 단기간에 확보가 가능한 일이지만 전문인력은 단기간에 확보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님. 따라서 향후 검역의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문인력의 육성임.
- 효율적이고 철저한 검역의 관건은 전문인력에 의해 좌우됨. 일본의 경우 검역소 예산 중 인건비 비중이 약 87%이고 나머지 13%가 사업비와 시설정비비로 되어 있어 인력관리가 가장 중요함을 알 수 있음(우리 나라의 경우 인건비 비중이 62%).
- 우리 나라의 경우 검역관 연수의 기초과정은 조사연구과에서 실시하고 그 외는 농업공무원 교육원에서 직무교육으로 대체하고 있어 전문인력 육성이 어려움. 일본은 농림공무원 교육원이 있지만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식검의 경우 식물방역소 연수센터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여기에는 기초과정(18일), 중급과정(12일), 고급과정(18일), 해외검역 특별교육(51일) 등으로 구분하여 단계별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 예컨대 일본의 경우: 시설수용능력 24명, 전임자 3명(연수지도관, 연수계장, 연수계원), 연수강사는 외부강사 및 내부 적임자

<연수 종류와 목적>

- ① 기초과정: 초임자 및 처음 식물 방역관이 된자로서 식물방역에 필요한 기초지식과 기술 습득
- ② 중급과정: 식물방역관이 된후 3-4년이 경과한자(고졸자로서 방역관이 된 후 4-5년이 경과)로서 식물병리, 해충, 선충, 농

약, 방제 등의 필요 과목 교육

③ 고급과정: 식물방역관이 된후 5년이 경과한자로 중급이상의 전문교육 실시

④ 해외검역 특별교육: 대부분 계장급 이상으로 영어교육과 조 건부 수입금지 해제 관련 교육

- 따라서 이미 지적인 농림수산부 직속의 연구직으로 구성된 연구소에서 교육훈련과를 두어 단계별 교육훈련을 실시해 나가야 할 것임.
- 식검의 경우 식물검역실무자 책임급인 5급이상의 공무원 전출입을 최대한 억제시켜 기술인력 축적에 노력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식물검역관의 신분을 농림직에서 1970년 전처럼 식물방역직으로 환원하는 방법도 고려 필요.
- 미국·일본 등 선진국처럼 품목별 할당제를 통해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더 나아가 지역별/분야별로 전문가 육성이 요구됨.

표 4-4 주요 선진국의 식물검역 연구기구 현황

구 분	일 본	네델란드	미 국
67 기구명칭	○ 5개 방역소내 조사연구부 - 병원과 - 해충과 - 조사과 - 훈련과	○ 식물보호 서비스내 4개 연구실 - 검역 병해연구실 - 검역해충연구실 - 바이러스연구실 - 격리검역연구실	○ 15개 병해충 검사소 ○ 수입식물 검정연구실 ○ 검역 병원 동정연구실 ○ 검역곤충연구실 ○ 유전자원연구실 ○ 수입금지병원균연구실 ○ 검역원 훈련원
지소 또는 출장소(개)	80	11	94
검역원 (명)	830	420	1,600
연구원 (명)	120	40 - 50	200 - 300

- 연구기능 강화; 검역의 국제화 및 과학적 근거주의에 맞추어 나아가기 위해 연구기능 강화가 필요함.
 - 예컨대 일본의 경우 검역소내 조사연구부가 있고 검역요원 연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은 생물학적 분석 및 분류지원단(BATS), APHIS 직업훈련센터(PDC)를 운영하고 있음(표 4-4 참조).

3.3. 시설 및 장비 확충

- UR/SPS의 과학적 근거주의에 맞추어 검역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확충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병해충 기본장비는 구비되었으나 첨단장비가 부족하고 노후장비 교체가 요구됨. 따라서 정밀검사가 가능하도록 최첨단 장비의 확보가 요구되고 이와 더불어 첨단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전문기술 확보도 요구됨.
- 동검의 경우 국내 유입물량의 대부분이 부산지소에서 검역되는데 검역의 효율성을 위해 최소한 본소와 동등한 정도의 시설장비 보강이 요구됨. 또한 검역의 효율성을 위해 품목별 계류시설 및 수용능력 등을 감안한 지역별 계류장 시설이 요구됨.
- 식검의 경우 지소는 자체 사무실조차 없어 타기관 건물에 임시 입주 주로 장비 및 인원이 보강되더라도 수용능력이 없는바 사무실 확보가 시급함.
- 식검의 경우 필요한 시설로는 강제순환식 훈증사이로 시설(곡물류), 냉장시설과 훈증창고시설(과실 채소류), 야적장(목재류), 콘테이너 야드(콘테이너 화물)가 필요함. 일본은 이들 시설을 공공재로 인식하여 정부에서 시설을 갖추고 이를 임대해 주고 있는 실정인 바 일본방식의 도입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임.
- 최근 컴퓨터가 각지소에 설치되어 검역업무가 전산화되고 있으나 데이터 입력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전산요원 충원도 1995년으로 되어 있는바 이를 앞당겨 빠른 시일내 data base를 구축해야 할 것임.

- 특히 UR/SPS에서 강조하는 위험 평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베이스 구축이 필요함. 데이터 베이스 구축은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함. 첫째, 위험평가를 위한 것이고 둘째, 검역의 효율성 평가를 위한 것으로 구분하여 구축할 필요가 있음. 선진국은 자료입력, 합격판정 여부 및 통관 절차 자료, 각국으로부터의정보 등 기존 자료 및 최신자료를 보관하여 검역업무에 활용하고 있음.
- 장기적으로는 선진국처럼 해외 병해충 및 질병 격리시설 완비를 통해 외래 병해충에 대한 전문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소비용 식물에 비해 번식용 식물은 격리재배가 필요함. 따라서 현재 1개의 격리재배소를 더욱 확대하고 격리재배 전문가 육성 필요.
 - 번식용 식물인 재식용 종자, 묘목, 구근류 등은 생산의 원종으로 사용되므로 병해충 전파 또는 만연 가능성이 높아 소량이라도 엄격한 검역이 필요함.
 - 일본은 전국 4개의 격리재배소가 있으며 과수, 서류는 식물방역소 격리포장에서 격리재배하고 구근류는 주로 수입자가 희망하고 방역소장이 인정하는 격리 포장지를 이용하고 있음. 격리재배에 필요한 과학적 기술적 검사방법(① 육안검사, ② 전자현미경 검사, ③ 항혈청에 의한 검사: 슬라이드법, 혼합법, 중층법, 미그로 응집법, 한천 겔내 확산법, 형광항체법, ④ 검정식물에 의한 검사: 즙액접종에 의한 방법, 접목에 의한 방법, 해충에 의한 접종 검정법)을 확립하고 전문 격리재배 인력을 확보하고 있음. 최근에는 네덜란드의 요구에 따라 일본 검역관이 현지 검역한 네덜란드산 히야신스, 튜립, 백합 등 5종의 구근류는 격리재배를 면제해 주고 있음.

3.4. 기술 및 정보 축적

- UR/SPS에 대비한 기술 및 정보축적은 대단히 중요함. 기술 및 정보 축적이 되어야 효율적 검역 및 통상마찰에 대응이 가능함

- 과학적 근거주의에 맞추어 동식물 검역기술 및 정보수집 분석기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해외선진국과의 정기협의회, FAO 본부의 데이터 베이스와의 연결, 검역 병해충의 표본 확보 등에 노력해야 할 것임.
- 장기적으로 선진국처럼 각종 방제 및 소독기술을 개발하여 동등성 인정에 따른 상대국의 이의제기에 대응하고 수출시장 확대에 기여해 나가야 할 것임. 특히 위험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확대하고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정보 관리능력을 제고해야 할 것임
 - UR/SPS에서 권장하고 있는 위험평가제도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술 및 정보관리 능력을 높여 필요한 정보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 일본의 경우 특정 병해충이 부착할 위험이 있는 식물을 검역하는 검역관은 검역 과정을 기록하고 해석 데이터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검역결과 중요 병해충을 발견한 경우에는 표본 및 검사기록을 요코하마 식물방역소 연구조사부에 보내 확인 보존하도록 하고 있음.

4. 관련 기관과의 협조 및 공조체제 구축

4.1. 기술 및 협력체제 구축

- 검역업무는 병해충의 분류동정, 방제·방역 기술 정립, 잔류농약 검정, 환경공해 등 여러 분야와 관련되고 공공재의 성격을 띤 점을 감안하여 산학관연 합동의 공조체제가 필요함. 이를 위해 정기적인 모임으로 유관기관 협의체구성을 제의함.
 - 현재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서류상 협조체제는 성과가 거의

없고 관련 기관에 업무협조를 부탁하는 경우에도 업무 부담을 이유로 협조체제가 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학계의 도움을 받고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인 협의체 구성이 크게 요구되고 있음.

4.2. 검역 병해충 및 해외악성 전염병의 예찰 및 방제(방역) 강화

- UR/SPS 협상 타결에 따라 검역 병해충 개념축소, 수입금지 지역의 축소 등으로 외래 병해충 및 질병유입 가능성이 우려되는바 병해충 예찰 및 방제방역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임.
- 예찰은 검역과정에서 막아 내지 못한 외래 병해충 및 질병 유입을 조기에 탐지하여 조기에 방제·방역하기 위한 것으로 선진국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음.
- 식물 관련 예찰업무는 농촌진흥청에서 하고 있으나 식물검역소와의 협조체제가 미흡한 것으로 보임.
 - 미국의 경우 외래 병해충이 감염되어 광범위하게 전파된 후에는 박멸이 불가능하므로 초기방제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음. 따라서 검역과정에서 막아내지 못한 외래 병해충 유입을 조속히 탐지하기 위해 다음 방법을 활용하고 있음.
 - ① 12종의 탐지방법으로 효과적인 유인 장치를 설치하여 지속적 예찰 활동을 함.
 - ② 각 농장의 해충방제 전문가, 농업종사자, 주민, 학자 등이 새로운 해충 발견시 각지방 농업 담당관에 신속 통보하고 만약 외래 병해충 또는 새로운 검역 병해충의 유입이 확인된 경우 능률적으로 방제 또는 벽멸시키기 위한 비상방제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음.
 - ③ 전직교수, 공무원 등 자문위원이 구성되어 개별농가의 예찰 및 방제 기술을 지도하고 있음.

- 미국처럼 철저한 예찰활동은 많은 전문인력과 예산이 필요한바 이에 대한 대책 강구가 필요함.
- 동검의 경우는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외래 악성 전염병 유입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동검, 가축위생연구소 시·도 가축위생시험소를 농림수산부 직속으로 개편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외래 병해충의 신속한 발견, 만약 유입시 방제 혹은 박멸시키기 위한 비상방제계획에 대한 상호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함.

4.3. 세관과의 협조 강화

- 운송수단의 발달, 해외여행객의 증가, 교포의 모국 방문 등으로 여행객의 휴대물품을 통한 침입 위험성이 높아져 세관과의 협조가 중요해지고 있음.
- 호주에서는 세관직원에게 대해 검역의 중요성 및 법규교육 등을 통해 최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입국신고서에 불필요한 것은 줄이고 검역과 관련된 사항을 더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음. 미국·캐나다도 입국신고서에 검역사항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
- 따라서 우리 나라도 세관과의 협조를 강화하고 입국신고서에 검역 관련 사항을 추가하는 노력이 필요함.

부 록 1

UR SPS 분야 주요 의제별 각국의 기본입장

1. SPS 개선의 기본 원칙(Basic Principle)

미국

- 조화(Harmonization)
 - 확실한 과학적 증거(sound scientific evidence)에 기초
 - 동등성(equivalence) 인정
 - * 국제기구의 위험평가지침은 확실한 과학적 증거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내국민 대우
- 국제기준을 사용치 않은 국가에 입증 의무

케언즈 그룹

- 지역적 조화(Regional Harmonization)

- 증명가능한 과학적 증거(verifiable scientific evidence)에 기초
- 수용 가능한 위험 수준(accertable level of risk)에 기초(잔류 허용기준치의 zero 베이스에 반대)
- 위험평가의 방법상의 조화
- 병해충 무발생 지역(Pest/Disease Free Area) 인정
- 동등성(equivalence) 인정

○ 내국민 대우

EC

○ 점진적인 조화(Harmonization)

- 관련 국제기구의 기준에 근거(필요시 다른 지역기구의 지침 사용 가능)
- 지역적인 조화에서 범세계적인 조화로
- 병해충 무발생 지역(Pest/Disease Free Area)의 인정
- 동등성(equivalence) 인정
- 수용 가능한 위험 수준(acceptable level of risk)에 기초(잔류 허용기준치의 zero베이스에 반대)

○ 국제기준과 특정 국가의 SPS 조치의 질적 차이 존재 인정

- 필요시 국제기준보다 엄격한 기준 사용 가능

○ 내국민 대우

일 본

○ 조화(Harmonization)

- 위생, 지리적 조건, 식관습에서의 차이를 감안해 필요한 범위내에서 SPS 조치의 조화

- 국제기준의 지침.표준을 따르되 과학적 증거(scientific evidence)에 근거한 조화
- SPS 절차방법에 있어서 조화
- 내국민 대우

북 구

- 조화(Harmonization)
 - 국가안보, 관행, 기후요인, 식관습 및 특정해충의 확산정도 등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엄격한 국내 기준의 사용(단 국제기준 미사용시 그 이유를 제시)
 - SPS 평가방법에 있어서 조화
 - 지역적 조화
- 내국민 대우
- 지방정부의 의무 준수

한 국

- 조화(Harmonization)의 증진
 - 자연조건, 식관습 및 SPS 기술상의 차이를 인정하여 국별 SPS 조치의 조화 증진
 - 과학적으로 입증된(scientifically proved) 조치에 기초

2. GATT 규정 강화

미국

- GATT XX;(b)의 공식 수정
 - 확실한 과학적 증거(sound scientific evidence)에 기초
 - 동등성(equivalence) 인정에 기초
- GATT XX;(b)의 재분류 및 수정(케언즈 그룹)

EC

- 생산 및 가공방법(PPM; Production and Processing Method)과 관련하여 GATT 규정 강화를 위한 프레임 워크(framework) 개발
 - 관련 국제기구의 기준에 근거한 조치는 필수적인 조치로 인정

일 본

- 국제기준에 기초한 조치는 GATT XX;(b)와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
- 국제기준이 없을 경우 과학적 증거에 기초하지 않는 SPS 조치의 정당성 여부는 분쟁 해결절차를 통해 결정

북 구

- 협정문(Code) 형식으로 GATT XX;(b) 개정

한 국

- 조화(Harmonization)의 증진

3. SPS 관련 분쟁 해결절차

미국

- 국제기구에서 추천한 전문가 명단에서 기술자문 그룹을 선정하고 이 그룹의 결정에 가장 중점을 두는 패널의 구성

케언즈 그룹

- 국제기구 또는 그들이 추천한 전문가 그룹이 기술적 자문을 제공하는 형식의 패널 구성
- 비적법조치 판결시 해당 무역손실의 보상

EC

- 단일 패널에서 모든 문제를 결정
 - 단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할 권리를 인정
 - 전문가는 관련 국제기구에서 작성된 전문가 등록부를 활용

일 본

- 국제기구의 GATT 분쟁 해결 참여

4. SPS 관련 협의절차

미국

- 쌍무협상 추진

케언즈 그룹

- 비공식적으로 국제기구에서 추천한 전문가 회의 활용
- 중요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협의 가능

EC / 일본

- 기술적 장벽(TBT) 그룹에서와 유사한 협의과정 설치

5. SPS 조치의 통고 문제

미국

- 모든 SPS 조치를 GATT에 통보
 - PPM 및 쌍무협의 결과를 포함
 - 비정부기구 및 지방정부의 SPS 조치 포함
- SPS 관련 정보의 자유스러운 이용(케언즈 그룹)

EC

- TBT 형태의 통고절차를 발전시킴
- 새로운 SPS 조치는 시행전에 통고(위급시 예외)

일 본

-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significantly affect trade) 조치를 GATT 통보

북 구

- 시행전에 상당한 기간을 두고 합리적인 공고
 - 이해 당사국 질의 가능
 - 국제기준 미사용시 GATT 통고

6. 개도국 우대

미국

- 개선된 SPS 조치를 개도국에 적용할 시의 영향평가 및 이에 기초한 기술지원(FAO와 협조)
- SPS 관련 정보의 자유스러운 이용(케언즈 그룹)

EC

- TBT 형태의 통고 절차를 발전시킴
- 새로운 SPS 조치는 시행전에 통고(위급시 예외)

부 록 2

UR SPS 분야 합의문(국문, 영문)

UR 위생 및 검역규제 적용에 관한 협정문(국문)

회원국은,

인간, 동물, 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채택 또는 시행할 수 있으나, 동조치가 동일 조건의 국가간에 자의적이고 불공정하게 차별되거나 국제교역에 위장된 제한수단으로 이용되지 않아야 함을 재확인하며

회원국 전체에 대한 인간 및 동물의 건강과 식물위생 상황의 개선을 추구하고

위생 및 검역규제가 자주 양자간 합의와 의정서에 근거하여 적용되어 진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무역에 있어 위생 및 검역규제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생 및 검역규제의 채택, 개발 및 시행을 관리하기 위한 다자간 규율설정을 추구하며

국제기준, 지침 및 권고가 동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있음

을 인정하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국제수역사무국(OIE) 및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체제내의 관련 국제 및 지역기구 등을 포함한 관련 국제기구에 의해 개발된 국제기준, 지침 및 권고에 기초하여 회원국이 인간, 동물, 식물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 수준의 보호조치를 변경됨이 없이 회원국간 조화된 위생 및 검역규제의 사용을 추구하며

수입국의 위생 및 검역규제 준수와 그 결과로 생기는 시장접근과 자국 영토내에서 위생 및 검역규제 확립과 시행에 있어 개도국이 직면한 어려움을 인정하여, 동분야에 있어 개도국의 노력에 대한 지원을 추구하고

위생 및 검역규제 관련, GATT규정 제20조(b)항⁸의 적용을 위한 GATT 1994의 규정을 개선.보완하며,

아래의 내용에 합의한다.

1. 본협정문은 국제교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위생 및 검역규제에 적용한다. 동위생 및 검역규제는 본협정문의 규정에 일치하여 개발 및 적용되어야 한다.
2. 본협정문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부속서 A에 의한다.
3. 부속서는 본협정문의 필수적인 구성요소이다.
4. 본협정문 범위의외의 조치와 관련하여 본 협정문은 기술장벽협정(TBT)에서의 회원국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기본권리 및 의무(Basic rights and obligations)>

5. 회원국은 인간, 동물, 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⁸ 본협정문에서 제20조(b)항이라 함은 제20조(b)항의 전체문안이 포함됨.

위생 및 검역규제조치가 본협정문의 내용과 합치되는 경우, 동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6. 회원국은 인간, 동물, 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위생 및 검역규제는 과학적 원리에 근거하며, 충분한 과학적 증거 없이 유지되지 않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제 22조에 규정된 사항은 예외로 한다.
7. 회원국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이 적용되는 회원국간에 자의적이고 불공정하게 위생 및 검역규제를 차별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한 자국영토와 회원국간에도 차별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위생 및 검역규제는 국제교역의 위장된 제한수단으로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8. 본협정문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는 위생 및 검역규제는 동규제조치의 이용과 관련이 있는 「GATT 1994」의 규정, 특히 제20조(b)항에 따른 회원국의 의무사항에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조화(Harmonization)>

9. 위생 및 검역규제를 가능한 광범위하게 조화시키기 위하여, 본협정문에 별도 규정된 것과 특히 제11조 규정을 제외하고, 회원국의 위생 및 검역규제는 국제기준, 지침 및 권고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10. 국제기준, 지침 및 권고와 일치하는 위생 및 검역규제는 인간, 동물, 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본협정문 및 「GATT 1994」규정에 합치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11. 회원국은 만일 과학적 정당성이 있거나 또는 회원국의 판단시 그들의 보호수준이 제16조에서 제23조까지의 관련 규정에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국제기준, 지침 및 권고에 근거한 조치로 달성 가능한 위생 및 검역 보호수준보다 높은 결과를 나타내는 위생 및 검역규제를 도입 또는 유지할 수 있다.⁹ 그러나 국제기준, 지침 및 권고에 근거한 조치로 달성되는 위생 및 검역보호 수준과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는 모든 규제는 본협정문의 모든 기타 규정과 상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12. 회원국은 모든 위생 및 검역규제와 관련된 모든 측면에서 기준, 지침 및 권고에 대한 개발 및 정기적인 검토를 촉진하고자 관련 국제기구 및 그 하부조직 특히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국제수역사무국(OIE) 및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체제 내의 국제 및 지역기구 등에 당해국가의 능력 범위내에서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13. 위생 및 검역규제위원회는 제38조와 제4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제간 조화의 진전현황 감시절차를 개발하여야 하며, 관련 국제기구와 국제간 조화노력에 동참하여야 한다.

<동등성(Equivalence)>

14. 수출국에서 그들의 조치가 수입국의 위생 및 검역의 적정 보호수준을 달성한다는 것을 수입국에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있는 증거를 제시한다면 동일물품에 대하여 자국 및 타회원국에서 사용하는 규제조치와 상이하더라도 회원국은 타회원국의 위생 및 검역규제를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수입국이 원할때에 검사, 시험 및 기타 관련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정당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15. 특정 위생 및 검역규제의 동등성 인정에 관한 양자 및 다자간 합의 도출을 목적으로 회원국은 요청시에 협의를 개시하여야 한다.

<위험평가, 위생 및 검역의 적정 보호수준 판단(Assessment of risk and determination of the appropriate level of sanitary or phytosanitary p

⁹ 제11조에서, 만일 회원국은 본협정문의 관련 규정과 합치되는 이용 가능한 과학정보의 조사와 평가에 근거하여, 관련 국제기준, 지침 및 권고가 적정보호수준 달성에 충분치 않다고 결정한다면, 과학적인 정당성이 있다고 본다.

rotection)>

16. 회원국은 그들의 위생 및 검역규제 조치가 관련 국제기구에 의해 개발된 위험평가기술을 참작하여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인간, 동물,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에 미칠 위험평가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17. 위험평가에 있어 회원국은 이용 가능한 과학적 증거, 관련 가공 및 생산방법, 관련 검사,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특정 병원 및 해충의 발생수준, 병해충 미발생지역의 존재, 생태 및 환경조건, 검역 및 기타 처리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8. 동물, 식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을 평가하고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적정 위생 및 검역보호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적용되는 조치를 판단함에 있어, 회원국은 관련 경제적 요소인 병원 및 해충이 발생 또는 전파될 경우 생산 및 판매에 미치는 손실, 수입국의 영토내에서 방역 및 박멸비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대체방법의 소요비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9. 위생 및 검역규제의 적정보호수준 판단시 회원국은 교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0. 인간, 동물, 식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적정 위생 및 검역의 보호수준이라는 개념의 적용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별회원국은 상이한 사항에 적절할 것으로 간주되는 보호수준의 자의적이고 불공정한 구분이 국제교역에 있어 차별적이고 위장된 제한을 초래한다면 이를 피하여야 한다. 회원국은 본협정문의 실제적인 시행을 추진하기 위한 지침을 개발하기 위하여 본협정문의 제38조,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위생 및 검역규제위원회와 협조하여야 한다. 지침개발에 있어 위원회는 자의적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사람 등 예외적인 특성을 포함한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21. 제10조 내용에 저촉됨이 없이, 적절한 위생 및 검역보호수준을 달성

하기 위한 위생 및 검역규제를 수립 또는 유지할 때에 회원국은 기술 및 경제적인 가능성을 고려하여 동규제가 적정보호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요청되는 수준 이상의 무역제한 조치가 되지 않아야 한다.¹⁰

22. 관련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회원국은 관련 국제기구 및 기타회원국이 적용하는 위생 및 검역조치를 포함하여, 입수가 가능한 정보에 근거하여 잠정적으로 위생 및 검역규제를 채택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회원국은 더욱 객관적인 위험평가를 위해 필요한 추가 정보를 수집하여 적절한 기간내에 위생 및 검역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
23. 타회원국이 도입 또는 유지하는 특정 위생 및 검역규제가 자국수출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가능성이 있으며 동규제가 관련 국제기구의 기준, 지침 및 권고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거나, 그러한 기준, 지침 및 권고가 없을 때 동 위생 및 검역규제에 대한 사유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규제를 유지하는 회원국은 이를 설명해야 한다.

<병해충미발생, 병균 및, 해충의 제한적 발생지역 등 지역조건에의 적응 (Adaptation to regional conditions, including pest-or disease-free areas and areas of low pest or disease prevalence)>

24. 회원국은 상품의 원산지 및 도착지역의(국가, 국가의 일부와 수개국가가 포함된 지역블론) 위생 및 검역 특징에 맞게 그들의 위생 및 검역규제를 적용하고 있음을 보장해야 한다. 지역의 위생 및 검역의 특징을 평가하는 데 회원국은 특정 병균 및 해충의 발생수준, 박멸, 방역계획의 유무, 관련 국제기구에 의해 개발된 적절한 기준 및

¹⁰ 제21조의 조치란 이용가능한 합리적인 기술 및 경제적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보호수준을 달성하기 하면서 더 이상 무역에 대한 제한이 현저히 저하되는 대체 조치가 없는 조치를 말한다.

지침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25. 특히 회원국은 병균 및 해충의 미발생 지역, 병균 및 해충의 제한적 발생지역의 개념을 인정하여야 한다. 동지역의 판정은 지리적, 생태학적, 역학적감시, 위생 및 검역관리의 효율성등의 요인에 근거하여야 한다.
26. 영토내 지역이 병균 및 해충의 미발생 또는 제한적 발생이라고 주장하는 수출국은 지역이 병균 및 해충이 미발생이거나 제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수입국에게 객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수입국이 원할 때에 검사, 시험 및 기타관련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정당한 접근이 있어야 한다.

<명료성(Transparency)>

27. 부속서 B의 규정에 따라 회원국은 그들의 위생 및 검역규제 변경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위생 및 검역규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방역, 검사 및, 허가절차(Control, inspection and approval procedures)>

28. 식품, 음료 혹은 사료의 첨가제 사용승인 및 오염물질 허용기준 설정 등의 국내 제도를 포함해 방역, 검사 및 허가절차의 운영에 있어 회원국은 부속서 C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또한 동절차가 본협정문의 규정에 부합함을 보장해야 한다.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29. 회원국은 양자간 혹은 적절한 국제기구를 통하여 타회원국, 특히 개발도상국에 기술지원제공을 촉진하기로 동의한다. 동지원은 국가통제기구설치를 포함하여 가공처리기술, 연구 및 하부조직 분야가 포함되며, 수출시장에서의 위생 및 검역의 적정보호 수준달성에 필요

한 위생 및 검역규제에 적응 및 부합할 수 있도록 전문기술지식 및 훈련 및 장비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문, 신용공여, 기부 및 무상원조의 형태가 될 수 있다.

30. 수입회원국의 위생 및 검역요구 조건을 수출개발도상 회원국이 충족하기 위하여 실제로 상당한 투자가 필요할 때에, 수입국은 개발도상국이 해당상품에 대한 시장접근 기회가 유지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제공할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특별대우(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31. 위생 및 검역규제의 마련 및 적용에 있어 회원국은 개발도상국, 특히 저개발국의 특별 필요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32. 위생 및 검역규제 적정보호수준의 범위가 새로운 위생 및 검역규제의 단계적인 도입을 허용한다면, 개발도상국이 수출기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들의 관심상품에 대한 장기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한다.
33. 개발도상국이 본협정문의 규정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생 및 검역규제위원회는 해당국가의 재정, 교역 및 개발수준 등을 참작하여 요청에 의거 본협정문에 의한 의무사항에 대하여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적용기간을 구체적으로 유예할 수 있다.
34. 회원국은 관련 국제기구에 개발도상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협의 및 분쟁 해결(Consultation and dispute settlement)>

35. 여기에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본협정문에 의거한 협의 및 분쟁 해결규정으로 「GATT 1994」 제22조 및 제23조 규정과 「MTO의 분쟁 해결규칙 및 절차에 협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36. 과학적이거나 기술적 사안이 포함된 본협정문과 관련된 분쟁시, 분쟁 해결위원회(PANEL)는 분쟁관련 회원국과 협의하여 위원회에 의해 선정된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 결국 분쟁 해결위

원회는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 분쟁당사국 의 요청 또는 위원회 재량에 의해 기술전문가 자문그룹을 구성하거나 관련 국제기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7. 본 협정문은 타 국제협정문에 의해 회원국에 부여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타 국제기구 및 타 국제협정하에 설치된 분쟁 해결 및 중재기구에 호소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

<행정기구(Administration)>

38. 정기적 협의기회가 제공되도록 「위생 및 검역규제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한다. 본협정문 규정의 시행 및 특히 조화 등의 목적달성 촉진을 위한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합의에 의해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
39. 위원회는 특정 위생 및 검역사안에 대하여 회원국간 특별협의 및 협상을 장려하고 촉진하여야 한다. 또한 위원회는 회원국간 국제기준, 지침 및 권고의 사용을 장려하여야 하고, 식품첨가제 사용허가, 식품, 음료 및 사료의 오염물질의 허용기준 설정에 대한 국제제도와 국내 제도간의 조정 및 통합과 접근을 촉진시키기 위해 기술협의를 지원하고 연구해야 한다.
40. 본협정문의 집행을 위한 최상의 과학 및 기술적 자문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중복작업을 피하기 위하여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국제수역사무국(OIE)및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사무국 등의 위생 및 검역보호 분야의 관련 국제기구와 위원회는 긴밀히 접촉하여야 한다.
41. 위원회는 국제적인 조화의 진행 및 국제기준, 지침 및 권고의 이용 상황을 감시하는 절차를 개발하여야 한다. 동목적에 위하여, 위원회는 관련 국제기구와 연계하여, 위원회가 교역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하는 위생 및 검역규제에 관한 국제기준, 지침 및 권고에 관한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동목록에는 회원국이 수입요건

- 또는 본기준에 합치되는 수입상품의 시장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로 사용되는 국제기준, 지침 및 권고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회원국이 수입조건으로 사용한 기준, 지침 및 권고에 관한 설명후, 입장이 변경되었다면, 부속서 B의 절차에 따라 통보 및 설명이 되지 않는다면, 변경사유를 MTO사무국 및 관련 국제기구에 통지하여야 한다.
42. 불필요한 업무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관련 국제기구에서 운영중인 통보 등의 절차에 의해 확보된 정보의 이용 여부를 위원회는 결정해야 한다.
43. 회원국의 발의를 근거로, 위원회는 적정한 경로를 통하여 제41조에 따라 기준사용철회에 대한 해명 등을 포함한 특정기준, 지침 및 권고와 관련된 특정사안을 조사하기 위해 국제기구 및 하부조직에 요청할 수 있다.
44. 위원회는 MTO설치협정 발효 3년후 본협정문 운영 및 시행을 재검토하고, 그후 필요시와 적절한 시기에 시행으로 얻어진 경험을 바탕으로 본협정문 전문에 대한 개정을 상품무역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시행(Implementation)>

45. 회원국은 여기에 규정된 본회원국의 모든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데 전적인 책임이 있다. 회원국은 중앙정치기구외의 기구가 본협정문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적극적인 조치 및 기구를 공식화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회원국은 영토내의 관련 조직이 회원인 지역기구는 물론 영토내의 비정부기구가 본 협정문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회원국은 지방정부 및 비정부조직등이 본협정문의 규정에 불일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요구하거나 장려하는 등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회원국은 그들 지방조직이 본

협정문의 규정을 따르게 될 경우에만, 위생 및 검역규제를 수행하기 위해 비정부조직의 업무에 의존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최종규정(Final provisions)>

46. 저개발도상국은 수입 및 수입품에 영향을 주는 위생 및 검역규제에 대하여 MTO 발효 후 5년동안 본 협정문의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 기타 개발도상국은 전문기술지식, 하부기술관련 조직, 재원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입 및 수입상품에 영향을 주는 현재의 위생 및 검역규제에 대해 제23조와 제27조를 제외하고 MTO 발효 후 2년 동안 본협정문의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

부속서 A 용어의 정의(Definition)¹¹

본협정문에서 아래의 정의가 적용된다.

1. 위생 및 검역규제(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

- 해충, 병원, 병원매개체 및 병원원인체의 도입, 정착 및 전파로 인해 생기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의 영토내에 동물 및 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하는 규제 조치
- 식품, 음료 및 사료에 첨가제, 오염물질, 독소 및 병원원인체로 인해 생기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 영토내에서 인간 및 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하는 규제조치
- 동물, 식물 및 동생산품에 의해 옮겨지는 병원 및 해충의 도입, 정착 및 전파로 인해 생기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 영토내에서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하는 규제조치
- 해충의 도입, 정착 및 전파로 인한 회원국 영토내의 기타 손실을 방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해 적용하는 규제조치

위생 및 검역규제는 모든 관련 법률(laws), 법령(decrees), 규정(regulations), 요구조건(requirements) 및 절차(procedures)를 포함한다. 이는 구체적인 최종제품의 기준, 가공 및 생산방법, 시험, 조사, 증명 및 허가절차, 동물 및 식물의 수송 및 수송중 생존에 필요한 물질과 관련된 조건을 포

¹¹ 이 정의에서 동물은 어류 및 야생동물을 포함하고, 식물은 산림의 수목 및 야생동물 포함하며, 해충은 잡초를, 오염물질은 농약 및 수의약품의 잔류 및 이물질을 포함한다.

함한 검역처리 관련 통계방법에 관한 규정, 식품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 되는 포장 및 표시(labeling)를 포함함

2. 조화(Harmonization)

각 회원국에 의한 공통의 위생 및 검역규제의 설정, 인정 및 적용

3. 국제기준, 지침 및 권고(International standards, guidelines and recommendations)

- 식품첨가제, 수의약품 및 농약잔류, 오염물질, 분석 및 시료채취방법, 위생에 관한 규약 및 지침에 관하여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에 의해 설정된 식품안전을 위한 기준, 지침 및 권고
- 동물위생 및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하여 국제수역사무국(OIE)의 후원하에 개발된 기준, 지침 및 권고
- 식물위생을 위해서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골격내에서 운영되는 지역기구의 협조로 IPPC의 사무국 후원하에 개발된 국제기준, 지침 및 권고

상기 기구의 업무범위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위생 및 검역규제 위원회가 인정하고 모든 회원국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기타 관련 국제기구에 의해 공표된 기준, 지침 및 권고

4. 위험평가(Risk assessment)

적용된 위생 및 검역규정에 따라 수입국 영토내에서 해충 및 병균이 도입, 정착 및 전파의 가능성과 잠재적인 관련 생물학적 및 경제적 결과의

가능성 판정, 식품, 사료 및 음료에서의 첨가제, 오염물질, 독소 및 병원 발생인자로 인해 인간 및 동물에 미치는 역효과를 판정하는 것

5. 위생 및 검역보호의 적정수준(Appropriate level of sanitary or phytosanitary protection)

회원국 영토내에서 인간, 동물, 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생 및 검역규제를 설정하는 회원국에 의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보호수준
(주: 많은 회원국들은 이 개념을 “허용 가능한 위험”으로 간주하고 있음)

6. 해충 및 병원 미발생 지역(Pest or disease-free area)

특정 해충 및 병원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주무 당국자에 의해 인정된 지역(국가, 국가의 일부 및 수개 국가를 포함한 지역에 불문함)

주: 해충 및 병원 미발생 지역은 특정 해충 및 병원이 발생되고 있으나, 해당 해충 및 병원을 제한 및 박멸하는 계획인 보호, 감시 및 완충 지역 설정 등 지역적 방역구제 대상이 되는 지역으로 둘러싸여 있거나 이 지역과 인접한 위치에 있을 수 있음.

7. 해충 및 병원의 제한적 발생지역(Area of low pest or disease prevalence)

특정 해충 및 병원이 제한적으로 발생되며, 효과적인 감시, 방역 및 박멸 규제의 대상인 것으로 주무 해당자에 의해 확인된 지역(국가, 국가의 일부 및 수개 국가를 포함한 지역을 불문함)

부속서 B 위생 및 검역규정의 명료성

Transparency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Regulations

1. 규정 발간

- ① 채택된 모든 위생 및 검역규정¹²은 관심을 갖고 있는 회원국이 규정을 알 수 있도록 발간하여야 한다.
- ② 긴급한 상황 이외는 수입국의 요구조건에 수출국의 제품 및 생산방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위생 및 검역규정의 발간 및 효력발생간에 수출국 특히 개발도상국 생산자에게 적절한 기간이 허용되어야 한다.

2. 문의 기구

- ① 관심을 가진 회원국으로부터 모든 정당한 질의에 대한 답변 및 아래와 관련한 문서의 제공책임이 있는 문의기구를 각 회원국은 확보하여야 한다.
 - i) 영토내에서 채택 및 제안된 모든 위생, 검역규정
 - ii) 영토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든 방역 및 검사절차, 생산 및 검역처리, 농약잔류허용치 및 식품첨가제 승인절차
 - iii) 위생 및 검역보호의 적정수준의 판정과 위험평가절차 및 고려요소
 - iv) 국제 및 지역위생과 검역기구 및 조직에의 회원국 가입사항과

¹²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률(laws), 법령(decrees or ordinances)과 같은 위생 및 검역 조치.

본협정문 범위내의 양자/다자간 협정과 합의사항, 합의문 사본

- ② 관심을 가진 회원국에 의해 문서사본의 제공요청이 있을 때 관련 회원국 국민¹³의 경우와 같이 배달비용을 제외하고는 같은 가격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3. 통보절차

- ① 국제기준, 권고 및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할 때 및 제안된 위생 및 검역규제 내용이 실제적으로 국제기준, 권고 및 지침의 내용과 동일하지 아니할 때와 규정이 타회원국의 교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때에,
- i) 회원국은 관심을 가진 회원국이 도입하려고 제안된 특정규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미리 예고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 ii) MTO 사무국을 통하여 규정에 포함된 제품, 목적 및 제안된 규정의 요약 등을 타회원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동 통보는 개정 가능성이 있고 타회원국의 제시된 의견을 검토할 수 있도록 조기에 행해져야 한다.
 - iii) 요청이 있을때 제안된 규정의 사본을 회원국에 제공하며 또한 가능한 경우 실제적으로 국제기준, 권고 및 지침과 다른 부분을 구분하여 주어야 한다.
 - iv) 타회원국에서 서면의견제시 요청이 있을시 제시 의견에 대한 협의와 그 결과에 대해 검토할 수 있도록 차별이 없이 적당한 기간이 허용되어야 한다.

¹³ 본협정문에서 국민(nationals)이라고 함은, MTO 관세영역 회원국의 경우, 관세영역내에 실제적인 세대를 갖고 있거나 거주하는 자연적이고 법적인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함.

② 그러나 회원국에 대해 건강보호상 긴급한 문제가 제기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에 동회원국은 상기 3.①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회원국은 다음 사항을 따라야 한다.

- i) MTO 사무국을 통하여 관련 규정 및 해당제품, 목적 및 규정 개요와 긴급한 문제의 성질을 타회원국에 통보
- ii) 타회원국 요청시 규정 사본의 제공
- iii) 타회원국 서면의견제시 요청이 있을 경우 제시의견에 대한 협의와 협의결과에 대한 검토 허용

③ MTO 사무국에 대한 통보는 영어, 불어 및 스페인어를 하여야 한다.

④ 타회원국이 요청이 있을 시에 선진국은 영어, 불어 및 스페인어로 작성된 문서의 사본을 제공해야 하고 문서분량이 많을 경우는 요약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MTO 사무국은 모든 회원국 및 관련 국제기구에 통보시 사본을 즉시 배포하여야 하며 개발도상국에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제품과 관련된 통보사항에 대하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⑥ 회원국은 상기 3.①, 3.②, 3.③ 및 3.④에 의한 통보절차와 관련된 규정에 대하여 국내에서의 시행에 책임이 있는 단일 중앙정부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4. 일반적 유보

① 본 협정문은 아래 사항을 요구하지 아니함.

- i) 본부속서의 3.④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회원국의 사용언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문서의 발간, 요약사본 및 특정규정의 제공
- ii) 또는 회원국의 위생 및 검역규정의 집행을 방해하거나 특정상사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침해하는 기밀정보의 공개

부속서 C 방역, 검사 및 허가절차¹⁴

Control, Inspection and Approval Procedure

1. 위생 및 검역규제조치 이행 여부의 점검 및 확인 절차에 있어 회원국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수입상품이 국내산 동종상품에 비하여 불리하지 않도록 절차가 진행되어 불필요한 지연없이 완료되어야 한다.
- ② 각 절차의 기준처리기한은 공표되어야 하며 예정 처리기한은 신청인의 요구가 있을 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청서의 접수시에 서류의 완비 여부를 검토하여 서류의 결함에 대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신청인에게 회시하여야 한다. 담당자는 가능한 정확하게 절차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전달하므로써 필요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청에 있어 결함이 있더라도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담당자는 실행가능한 수준까지 절차를 진행시켜야 한다. 요청시 지연사유 설명과 아울러 절차의 진행단계를 신청인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 ③ 첨가제 사용의 허가 및 허용기준의 설정을 포함, 적절한 방역, 검사 및 허가절차상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정보를 요구하여야 한다.
- ④ 방역, 검사 및 허가와 관련하여 제공되었거나 만들어진 수입상품에 관한 기밀정보는 국내 상품보다 불리한 방법으로 취급되어서는 아니 되며, 정당한 상업적 이익이 보호되는 방법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 ⑤ 제품의 개별 건본의 관리, 검사 및 허가를 위한 요구사항은 합리적

¹⁴ 방역, 검역 및 허가 절차에는 시료 채취, 시험 및 증명을 포함함.

이어야 하고 필요한 것에 한정되어야 한다.

- ⑥ 수입상품의 허가절차에 부과되는 비용은 국내의 동종상품 및 타회원국 상품에 부과되는 비용과 동일하여야 하며 실제비용보다 높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⑦ 신청인, 수입자, 수출자 및 대리인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수입상품의 절차 및 시료취득에 이용되는 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준은 국내 생산물에 대한 기준과 같아야 한다.
- ⑧ 적용 가능한 규정으로 판단하여 보아, 방역 및 검사후 상품의 내역이 바뀌었을때 변형된 상품에 대한 절차는 동상품이 여전히 관련 규정에 합치되는지에 대한 신뢰성 여부 판단에 필요한 사항에 한정되어야 한다.
- ⑨ 동절차의 운영에 관한 소송(Complaint)심사절차 및 소송이 정당할 시에 시정조치절차가 확립되어야 한다.

식품, 음료 및 사료에서 식품첨가제 사용승인 및 오염물질의 허용기준치 설정시, 수입국이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이유로 수입국 국내 시장접근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수입국은 최종결정시까지 접근의 근거로 관련국제기준의 사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위생 및 검역규제가 생산단계에서의 통제를 규정하는 경우 생산이 이루어지는 회원국은 통제담당기관에서 통제 및 작업이 용이하게 하도록 필요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3. 본협정문은 회원국이 자국 영토내에서 정당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UR 위생 및 검역규제 적용에 관한 협정문 (영문)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Members,

Reaffirming that no Member should be prevented from adopting or enforcing measures necessary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subject to the requirement that they are not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between Members where the same conditions prevail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

Desiring to improve the human health, animal health and phytosanitary situation in all Members;

Noting that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are often applied on the basis of bilateral agreements or protocols;

Desiring the establishment of a multilateral framework of rules and disciplines to guide the adoption, development and the enforcement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in order to minimize their negative effects on trade;

Recognizing the important contribution that international standards, guidelines and recommendations can make in this regard;

Desiring to further the use of harmonized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between Members, on the basis of international standards, guidelines and recommendations developed by the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the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the International Office of Epizootics, and the relevant international and regional organizations operating within the framework of the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without requiring Members to change their appropriate level of protection of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Recognizing that developing country Members may encounter special difficulties in complying with the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s of importing Members, and as a consequence, in access to markets, and also in the formulation and application of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s in their own territories, and desiring to assist them in their endeavours in this regard;

Desiring therefore to elaborate rules for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GATT 1994 which relate to the use of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s, in particular the provisions of Article XX(b)¹⁵ ;

Agree as follows:

1. This Agreement applies to all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which may,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 international trade. Such measures shall be developed and appli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2.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the definitions provided in Annex A shall apply.
3. The annexes are an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4.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affect the rights of Members under the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with respect to measures not within the scope of this Agreement.

Basic Rights and Obligations

5. Members have the right to take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¹⁵ In this Agreement, reference to Article XX(b) includes also the chapeau of that Article.

health, provided that such measures are not in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6. Members shall ensure that any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 is applied only to the extent necessary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is based on scientific principles and is not maintained without sufficient scientific evidence, except as provided for in paragraph 22.

7. Members shall ensure that their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do not arbitrarily or unjustifiably discriminate between Members where identical or similar conditions prevail, including between their own territory and other Member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hall not be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

8.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s which conform to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shall be presumed to be in accordance with the obligations of the Members under the provisions of the GATT 1944 which relate to the use of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s, in particular the provisions of Article XX(b).

Harmonization

9. To harmonize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on as wide a basis as possible, Members shall base their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s on international standards, guidelines or recommendations, where they exist,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for in this Agreement, and in particular in paragraph 11.

10.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s which conform to international standards, guidelines or recommendations shall be deemed to be necessary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and presumed to be consistent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nd of the GATT 1994.

11. Members may introduce or maintain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s which result in a higher level of sanitary or phytosanitary protection than would be achieved by measures based on the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 guidelines or recommendations, if there is a scientific justification, or as a consequence of the level of protection a Member determines to be appropriate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paragraphs 16 through 23.¹⁶ Notwithstanding the above,

all measures which result in a level of sanitary or phytosanitary protection different from that which would be achieved by measures based on international standards, guidelines or recommendations shall not be inconsistent with any other provision of this Agreement.

12. Members shall play a full part within the limits of their resources in the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heir subsidiary bodies, in particular the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the International Office of Epizootics, and in the international and regional organizations operating within the framework of the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to promote within these organizations the development and periodic review of standards, guidelines and recommendations with respect to all aspects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13. The Committee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as provided for in paragraphs 38 and 41, shall develop a procedure to monitor the process of international harmonization and coordinate efforts in this regard with the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quivalence

14. Members shall accept the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s of other Members as equivalent, even if these measures differ from their own or from those used by other Members trading in the same product, if the exporting Member objectively demonstrates to the importing Member that its measures achieve the importing Member's appropriate level of sanitary or phytosanitary protection. For this purpose, reasonable access shall be given, upon request, to the importing Member for inspection, testing and other relevant procedures.

15. Members shall, upon request, enter into consultations with the aim of achieving bilateral and multilateral agreements on recognition of the

¹⁶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11, there is a scientific justification if, on the basis of an examination and evaluation of available scientific information in conformity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 Member determines that the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 guidelines or recommendations are not sufficient to achieve its appropriate level of protection.

equivalence of specified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s.

Assessment of Risk and Determination of the Appropriate Level of Sanitary or Phytosanitary Protection

16. Members shall ensure that their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s are based on an assessment, as appropriate to the circumstances, of the risks to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taking into account risk assessment techniques developed by the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17. In the assessment of risks, Members shall take into account available scientific evidence; relevant processes and production methods; relevant inspection, sampling and testing methods; prevalence of specific diseases or pests; existence of pest- or disease-free areas; relevant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quarantine or other treatment.

18. In assessing the risk to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and determining the measure to be applied for achieving the appropriate level of sanitary or phytosanitary protection from such risk, Members shall take into account as relevant economic factors: the potential damage in terms of loss of production or sales in the event of the entry, establishment or spread of a pest or disease; the costs of control or eradication in the territory of the importing Member; and the relative cost effectiveness of alternative approaches to limiting risks.

19. Members should, when determining the appropriate level of sanitary or phytosanitary protection, take into account the objective of minimizing negative trade effects.

20. With the objective of achieving consistency in the application of the concept of appropriate level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protection against risks to human life or to animal and plant life or health, each Member shall avoid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tinctions in the levels it considers to be appropriate in different situations, if such distinctions result in discrimination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 Members shall co-operate in the Committee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38,39 and 40 of this Agreement to develop guidelines to further the practical implementation of this provision. In developing the guidelines Committee shall take into account all relevant factors, including the

exceptional character of human health risks to which people voluntarily expose themselves.

21. Without prejudice to paragraph 10, when establishing or maintaining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s to achieve the appropriate level of sanitary or phytosanitary protection, Members shall ensure that such measures are not more trade restrictive than required to achieve their appropriate level of protection, taking into account technical and economic feasibility.¹⁷

22. In cases where relevant scientific evidence is insufficient, a Member may provisionally adopt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s on the basis of available pertinent information, including that from the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s well as from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s applied by other Members. In such circumstances, Members shall seek to obtain the additional information necessary for more objective assessment of risk and review the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 accordingly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23. When a Member has reason to believe that a specific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 introduced or maintained by another Member is constraining, or has the potential to constrain, its exports and the measure is not based on the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 guidelines or recommendations, or such standards, guidelines or recommendations do not exist, an explanation of the reasons for such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 may be requested and shall be provided by the Member maintaining the measure.

Adaptation to Regional Conditions, including Pest or Disease-Free Areas and Areas of Low Pest or Disease Prevalence

24. Members shall ensure that their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s are adapted to the sanitary or phytosanitary characteristics of the area—whether a country, part of a country, or areas of several countries—from which the product originated and to which the product is destined. In assessing the sanitary or phytosanitary characteristics

¹⁷ For purposes of paragraph 21, a measure is not more trade restrictive than required unless there is another measure, reasonably available taking into account technical and economic feasibility, that achieves the appropriate level of protection and is significantly less restrictive to trade.

of a region, Members shall take into account, inter alia, the level of prevalence of specific diseases or pests, the existence of eradication or control programmes, and appropriate criteria or guidelines which may be developed by the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25. Members shall, in particular, recognize the concepts of pest-or disease-free areas and areas of low pest or disease prevalence. Determination of such areas shall be based on factors such as geography, ecosystems, epidemiological surveillance, and the effectiveness of sanitary or phytosanitary controls.

26. Exporting Members claiming that areas within their territories are pest-or disease-free areas of low pest or disease prevalence shall provide the necessary evidence thereof in order to objectively demonstrate to the importing Member that such areas are, and are likely to remain, pest-or disease-free or areas of low pest or disease prevalence, respectively. For this purpose, reasonable access shall be given, upon request, to the importing Member for inspection, testing and other relevant procedures.

Transparency

27. Members shall notify changes in their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s and shall provide information on their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nnex B.

Control, Inspection and Approval Procedures

28. Members shall observe the provisions of Annex C in the operation of control, inspection and approval procedures, including national systems for approving the use of additives or for establishing tolerances for contaminants in foods, beverages or feedstuffs, and otherwise ensure that their procedures are not in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Technical Assistance

29. Members agree to facilitate the provision of technical assistance to other Members, especially developing country Members, either bilaterally or through the appropriat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sistance may be, inter alia, in the areas of processing technologies, research and infrastructure, including in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regulatory bodies, and may take the form of advice, credits, donations and grants, including for the purpose of seeking technical expertise, training and equipment to allow such countries to adjust to, and comply with,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s necessary to achieve the appropriate level of sanitary or phytosanitary protection in their export markets.

30. Where substantial investments are required in order for an exporting developing country Member to fulfil the sanitary or phytosanitary requirements of an importing Member, the latter shall consider providing such technical assistance as will permit the developing country Member to maintain and expand its market access opportunities for the product involved.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31. In the preparation and application of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s, Members shall take account of the special needs of developing country Members, and in particular of the least-developed ones.

32. Where the appropriate level of sanitary or phytosanitary protection allows scope for the phased introduction of new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s, longer time-frames for compliance should be accorded on products of interest to developing country Members so as to maintain opportunities for their exports.

33. With a view to ensuring that developing country Members are able to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the Committee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provided for below, is enabled to grant to such countries, upon request, specified, time-limited exceptions in whole or in part from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taking into account their financial, trade and development needs.

34. Members should encourage and facilitate the active participation of developing country Members in the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onsultations and Dispute Settlement

35. The provisions of Articles XXII and XXIII of the GATT 1994 as elaborated and applied by the MTO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shall apply to consultations and the settlement of disputes under this Agreement, except as otherwise specifically provided herein.

36. In a dispute under this Agreement involving scientific or technical issues, a panel should seek advice from experts chosen by the panel in consultation with the parties to the dispute. To this end, the panel may, when it deems it appropriate, establish an advisory technical experts group, or consult the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t the request of either party to the dispute or on its own initiative.

37.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impair the rights of Members under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including the rights to resort to the good offices or dispute settlement mechanisms of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r established under any international agreement.

Administration

38. A Committee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hall be established to provide a regular forum for consultations. It shall carry out the functions necessary to implement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nd the furtherance of its objectives, in particular with respect to harmonization. The Committee shall reach its decisions by consensus.

39. The Committee shall encourage and facilitate ad hoc consultations or negotiations among its Members on specific sanitary or phytosanitary issues. The Committee shall encourage the use of international standards, guidelines or recommendations by all Members and, in this regard, shall sponsor technical consultation and study with the objective of increasing coordination and integration between international and national systems and approaches for approving the use of food additives or for establishing tolerances for contaminants in foods, beverages and feedstuffs.

40. The Committee shall maintain close contact with the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the field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protection, especially with the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the International Office of Epizootics, and the Secretariat of the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with the objective of

securing the best available scientific and technical advice for the administration of this Agreement and in order to ensure that unnecessary duplication of effort is avoided.

41. The Committee shall develop a procedure to monitor the process of international harmonization and the use of international standards, guidelines or recommendations. For this purpose, the Committee should, in conjunction with the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stablish a list of international standards, guidelines or recommendations relating to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s which the Committee determines to have a major trade impact. The list should include an indication by Members of those international standards, guidelines or recommendations which they apply as conditions for Import or on the basis of which imported products conforming to these standards can enjoy access to their markets. For those cases in which a Member does not apply an international standard, guideline or recommendation as a condition for import, the Member should provide an indication of the reason thereof, and, in particular, if it considers that the standard is not stringent enough to provide the appropriate level of sanitary or phytosanitary protection. If a Member revises its position, following its indication of the use of a standard, guideline or recommendation as a condition for import, it should provide an explanation for its change and so inform the MTO Secretariat as well as the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unless such notification and explanation is given according to the procedures of Annex B.

42. In order to avoid unnecessary duplication, the Committee may decide, as appropriate, to use the information generated by the procedures, particularly for notification, which are in operation in the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43. The committee may, on the basis of an initiative from one of the Members, through appropriate channels invite the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r their subsidiary bodies to examine specific matters with respect to a particular standard, guideline or recommendation, including the basis of explanations for non-use given according to paragraph 41 above.

44. The Committee shall review the oper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three years after entry into force of the Agreement Establishing the MTO, and thereafter as the need arises. Where appropriate, the Committee may submit to the Council for Trade in Goods proposals to amend the text of this Agreement having regard,

inter alia, to the experience gained in its implementation.

Implementation

45. Members are fully responsible under this Agreement for the observance of all obligations set forth herein. Members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positive measures and mechanisms in support of the observance of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by other than central government bodies. Members shall take such reasonable measures as may be available to them to ensure that non-governmental entities within their territories, as well as regional bodies in which relevant entities within their territories are Members, comply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In addition, Members shall not take measures which have the effect of directly or indirectly, requiring or encouraging such regional or non-governmental entities, or local governmental bodies, to act in a manner in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Members shall ensure that they rely on the services of non-governmental entities for implementing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s only if these entities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46. The least developed country Members may delay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for a period of 5 years following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MTO with respect to their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s affecting importation or imported products. Other developing country Members may delay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other than paragraphs 23 and 27, for 2 years following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Agreement establishing the MTO with respect to their existing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s affecting importation or imported products where such application is prevented by a lack of technical expertise, technical infrastructure or resources.

ANNEX A

DEFINITIONS¹⁸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the following definitions shall apply:

1.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Any measure applied:*

- to protect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within the territory of the Member from risks arising from the entry, establishment or spread of pests, diseases, disease-carrying organisms or disease-causing organisms;
- to protect human or animal life or health within the territory of the Member from risks arising from additives, contaminants, toxins or disease-causing organisms in foods, beverages or feed stuffs;
- to protect human life or health within the territory of the Member from risks arising from diseases carried by animals, plants or products thereof, or from the entry, establishment or spread of pests; or
- to prevent or limit other damage within the territory of the Member from the entry, establishment or spread of pests.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s include all relevant laws, decrees, regulations, requirements and procedures including, inter alia, end product criteria; processes and production methods; testing, inspection, certification and approval procedures; quarantine treatments including relevant requirements associated with the transport of animals or plants, or with the materials necessary for their survival during transport; provisions on relevant statistical methods, sampling

¹⁸F For the purpose of these definitions "animal" includes fish and wild flora; "pests" include weeds; and "contaminants" include pesticide and veterinary drug residues and extraneous matter.

procedures and methods of risk assessment; and packaging and labelling requirements directly related to food safety.

2. *Harmonization* - The establishment, recognition and application of comm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 by different Members.

3. *International standards, guidelines and recommendations*

- for food safety, the standards, guidelines and recommendations established by the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relating to food additives, veterinary drug and pesticide residues, contaminants, methods of analysis and sampling, and codes and guidelines of hygienic practice;
- for animal health and zoonoses, the standards, guidelines and recommendations developed under the auspices of the International Office of Epizootics;
- for plant health, the international standards, guidelines and recommendations developed under the auspices of the Secretariat of the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in cooperation with regional organizations operating within the framework of the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and
- for matters not covered by the above organizations, appropriate standards, guidelines and recommendations promulgated by other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pen for Membership to all Members, as identified by the Committee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4. *Risk assessment* - The evaluation of the likelihood of entry, establishment or spread of a pest or disease within the territory of an importing Member according to the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s which might be applied, and of the associated potential biological and economic consequences; or the evaluation of the potential for adverse effects on human or animal health arising from the presence of additives, contaminants, toxins or disease-causing organisms in food, feedstuffs and beverages.

5. *Appropriate Level of Sanitary or Phytosanitary Protection* - The level of protection deemed appropriate by the Member establishing a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within its territory.

NOTE: Many Members otherwise refer to this concept as the "acceptable level of risk".

6. *Pest-or Disease-Free Area* -An area, whether all of a country, part of a country, or all or parts of several countries, as identifi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in which a specific pest or disease does not occur.

NOTE: A pest-or disease-free area may surround, be surrounded by, or be adjacent to an area-whether within part of a country or in a geographic region which includes parts of or all of several countries-in which a specific pest or disease is known to occur but is subject to regional control measure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protection, surveillance and buffer zones which will confine or eradicate the pest or disease in question.

7. *Area of low pest or disease prevalence* -An area, whether all of a country, part of a country, or all or parts of several countries, as identifi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in which a specific pest or disease occurs at low levels and which are subject to effective surveillance, control or eradication measures.

ANNEX B

TRANSPARENCY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REGULATIONS

1. Publication of regulations

1.1 Members shall ensure that all sanitary and phytosanitary regulations¹⁹ which have been adopted are published promptly in such a manner as to enable interested Members to become acquainted with them.

1.2 Except in urgent circumstances, Members shall allow a reasonable interval between the publication of a sanitary or phytosanitary regulation and its entry into force in order to allow time for producers in exporting Members, and particularly in developing country Members, to adapt their products and methods of production to the requirements of the importing Member.

2. Enquiry points

2.1 Each Member shall ensure that one enquiry point exists which is responsible for the provision of answers to all reasonable questions from interested Members as well as for the provision of relevant documents regarding:

- (a) any sanitary or phytosanitary regulations adopted or proposed within its territory;
- (b) any control and inspection procedures, production and quarantine treatment, pesticide tolerance and food additive approval procedures, which are operated within its territory;
- (c) risk assessment procedures, factors taken into consideration, as well as the determination of the appropriate level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protection;

¹⁹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uch as laws, decrees or ordinances which are applicable generally.

- (d) the Membership and participation of the Member, or of relevant bodies within its territory, in international and regional sanitary and phytosanitary organizations and systems, as well as in bilateral and multilateral agreements and arrangements within the scope of this Agreement, and the texts of such agreements and arrangements.

2.2 Members shall ensure that where copies of documents are requested by interested Members, they are supplied at the same price (if any), apart from the cost of delivery, as to the nationals²⁰ of the Member concerned.

3. Notification procedures

3.1 Whenever an international standard, guideline or recommendation does not exist or the content of a proposed sanitary or phytosanitary regulation is not substantially the same as the content of an international standard, guideline or recommendation, and if the regulation may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rade of other Members, Members shall:

- (a) publish a notice at an early stage in such a manner as to enable interested Members to become acquainted with the proposal to introduce a particular regulation;
- (b) notify other Member, through the MTO Secretariat, of the products to be covered by the regulation together with a brief indication of the objective and rationale of the proposed regulation. Such notifications shall take place at an early stage, when amendments can still be introduced and comments taken into account;
- (c) provide upon request to other Members copies of the proposed regulation and, whenever possible, identify the parts which in substance deviate from international standards, guidelines or recommendations;

²⁰ when "nationals" are referred to in this Agreement, they shall be deemed, in the case of a separate customs territory Member of the MTO, to mean persons, natural or legal, who are domiciled or who have a real and effective commercial establishment in that customs territory.

- (d) without discrimination, allow reasonable time for other Members to make comments in writing, discuss these comments upon request, and take the comments and the results of the discussions into account.

3.2 However, where urgent problems of health protection arise or threaten to arise for a Member, that Member may omit such of the steps enumerated in paragraph 3.1 of this Annex as it finds necessary, provided that the Member:

- (a) immediately notifies other Members, through the MTO Secretariat, of the particular regulation and the products covered, with a brief indication of the objective and the rationale of the regulation, including the nature of the urgent problem(s);
- (b) provides upon request to other Members copies of the regulation;
- (c) allows other Members to make comments in writing, discusses these comments upon request, and takes the comments and the results of the discussions into account.

3.3 Notifications to the MTO Secretariat shall be in English, French or Spanish.

3.4 Developed country Members shall, if requested by other Members, provide copies of the documents or, in case of voluminous documents, summaries of the documents covered by a specific notification in English, French or Spanish.

3.5 The MTO Secretariat shall promptly circulate copies of the notification to all Members and interest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draw the attention of developing country Members to any notifications relating to products of particular interest to them.

3.6 Members shall designate one single central government authority as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n the national level, of the provisions concerning notification procedures according to paragraphs 3.1, 3.2, 3.3 and 3.4 of this Annex.

4. *General reservations*

4.1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as requiring:

- (a) the provision of particulars or copies of drafts or the publication of texts other than in the language of the Member except as stated in paragraph 3.4 of this Annex; or
- (b) Members to disclose confidential information which would impede enforcement of sanitary or phytosanitary legislation or which would prejudice the legitimate commercial interests of particular enterprises.

ANNEX C

CONTROL, INSPECTION AND APPROVAL PROCEDURES²¹

1. Members shall ensure, with respect to any procedure to check and ensure the fulfilment of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s, that:
 - (a) such procedures are undertaken and completed without undue delay and in no less favourable manner for imported products than for like domestic products;
 - (b) the standard processing period of each procedure is published or that the anticipated processing period is communicated to the applicant upon request; when receiving an application, the competent body promptly examines the completeness of the documentation and informs the applicant in a precise and complete manner of all deficiencies; the competent body transmits as soon as possible the results of the procedure in a precise and complete manner to the applicant so that corrective action may be taken if necessary; even when the application has deficiencies, the competent body proceeds as far as practicable with the procedure if the applicant so requests; and that upon request, the applicant is informed of the stage of the procedure, with any delay being explained;
 - (c) information requirements are limited to what is necessary for appropriate control, inspection and approval procedures, including for approval of the use of additives or for the establishment of tolerances;
 - (d) the confidentiality of information about imported products arising from or supplied in connection with control, inspection and approval is respected in a way no less favourable than for domestic products and in such a manner that legitimate commercial interests are protected;
 - (e) any requirements for control, inspection and approval of

²¹ Control inspection and approval procedures include, inter alia, procedures for sampling, testing and certification.

individual specimens of a product are limited to what is reasonable and necessary;

- (f) any fees imposed for the procedures on imported products are equitable in relation to any fees charged on like domestic products or products originating in any other Member and should be no higher than the actual cost of the service;
- (g) the same criteria should be used in the siting of facilities used in the procedures and the selection of samples of imported products as for domestic products so as to minimize the inconvenience to applicants, importers, exporters or their agents;
- (h) whenever specifications of a product are changed subsequent to its control and inspection in light of the applicable regulations the procedure for the modified product is limited to what i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adequate confidence exists that the product still meets the regulations concerned; and
- (i) a procedure exists to review complaint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such procedures and to take corrective action when a complaint is justified.

Where an importing Member operates a system for the approval of the use of food additives or for the establishment of tolerances for contaminants in food, feedstuffs or beverages which prohibits or restricts access to its domestic markets for products based on the absence of an approval, the importing Member shall consider the use of a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 as the basis for access until a final determination is made.

2. Where a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 specifies control at the level of production, the Member in whose territory the production takes place shall provide the necessary assistance to facilitate such control and the work of the controlling authorities.

3.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prevent Members from carrying out reasonable inspection within their own territories.

부록 3

UR SPS 분야 미국의 수정 제안 내용

조 문	던켈 초안(DFA)상의 내용	미국의 수정 제안 내용
제6조	Contracting Parties shall ensure that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are applied only to the extent necessary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are based on scientific principles and are not maintained <u>against available scientific evidence</u>. 이용 가능한 과학적 증거에 반하는 SPS조치는 유지되지 않음을 보장.	Members shall ensure that . . . , and are not maintained <u>where there is no longer a scientific justification for such measures</u>. Scientific justification means a reason based on data or information derived and analyzed using appropriate scientific methods. 더 이상 과학적 정당성이 없는 SPS조치는 유지되지 않음을 보장. 이때 과학적 정당성이란 적절한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유도, 분석된 자료 또는 정보에 근거한 논리를 의미함.

조 문	던켈 초안(DFA)상의 내용	미국의 수정 제안 내용
제9조	To harmonize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on as wide a basis as possible, contracting parties shall base their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on international standards, guidelines or recommendations, where they exist,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for in this decision. 가능한 한 광범위한 기초에 근거하여 각국의 SPS조치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국제기준이 있는 경우 계약국은 자신의 SPS조치를 국제기준, 지침 권고에 토대를 두어야 함. 국제적 기준이 없을 경우 본 합의결정문에서 제시된 지침에 따름.	To harmonize . . . as wide a basis as possible, <u>and without requiring the reduction of the level of protection of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u> Member shall . . . in this decision. <추가>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수준의 적하없이
제10조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s which conform to international standards, guidelines or recommendations shall be deemed to be necessary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and presumed to be consistent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decision and of the General Agreement. 국제기준, 지침, 권고와 합치하는 SPS조치는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보호에 필수적인 조치로 간주되며, 본 합의결정문 및 GATT의 관련조항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됨.	Sanitary . . . of the General Agreement. This paragraph is not to be construed to create an adverse presumption regarding the consistency with this Agreement of a measure that does not conform to an international standards, guidelines or recommendations. <추가> 동조항이 국제적인 기준, 지침, 권고와 부합되지 않는 SPS 조치와 GATT 규율과의 일치에 있어 부정적인 추측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음

조 문	던켈 초안(DFA)상의 내용	미국의 수정 제안 내용
제18조	In assessing the risk and determining the appropriate level of sanitary or phytosanitary protection, contracting parties shall take into account as relevant economic factors the potential damage in terms of loss of production or sales in the event of the entry, establishment or spread of a pest or disease, the cost of control or eradication in the importing contracting party, and the relative cost effectiveness of alternative approaches to limiting risks. 위험평가 및 적정 보호수준의 결정에 있어 체약국은 관련 경제적 요소인 병충해의 유입/전파로 인한 생산 또는 판매상의 손실측면에서의 손해와 방제/박멸비용 및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용가능한 대체방법의 상대비용 등을 고려해야 함.	In assessing the risk <u>associated with the introduction, establishment or spread of an animal or plant pest or disease</u> and determining the appropriate level of sanitary or phytosanitary protection <u>from such risk</u>, Members shall take into account . . . to limiting risks. <삽입> 동식물 질병 혹은 병해충의 유입 / 전파 / 확산과 관련된 위험을 평가하고 그러한 위험으로부터의 적정 보호를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제21조	Without prejudice to paragraph 10, when establishing or maintaining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s to achieve the appropriate level of sanitary or phytosanitary protection, contracting parties shall ensure that such measures are the least restrictive to trade, taking account technical and economic feasibility.	Without . . . economic feasibility. Least restrictive to trade means that there is no reasonably available alternative measure that is of a type significantly less trade restrictive.

조 문	던켈 초안(DFA)상의 내용	미국의 수정 제안 내용
제21조	국제기준, 지침, 권고와 합치하는 SPS조치는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보호에 필수적인 조치로 간주되며, 본 합의결정문 및 GATT의 관련조항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됨.	<추가> 동조항이 국제적인 기준, 지침, 권고와 부합되지 않는 SPS 조치와 GATT 규율과의 일치에 있어 부정적인 추측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음

참 고 문 헌

- 농림수산부, “우리 나라의 농산물·식물 검역 및 위생검사 개요,” 농업통상 자료 92-9, 1992, 12.
- 농림수산부, 「UR농산물 협정문(안)」, 1991, 12.
- 농림수산부, “1992 동식물 검역현황 추진대책,” 1992, 1.
- 국립동물검역소, “동물 검역강화 5개년계획,” 1992, 1.
- 국립식물검역소, 「식물검역 관련 해외 연수 및 조사보고서」, 제1권, 제2권, 자료 92-3-42, 1992.
- 국립식물검역소, “식물검역 강화 5개년 계획,” 1991.
- 성배영외, 「농축산물의 효율적 수입관리체계 확립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C90-3, 1990, 6.
- 심성섭, “개방화에 따른 식물검역 대응방안,” 한국농업과학협회, 제9권, pp.75-86, 1988.
- 안신환, “국제검역질서 재편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우건석, “수출입 식물검역 기술과 시설 및 제도연구,” 「선진해외 농업기술 현황 공동연구」, 제2권, 서울대, 1992, 12.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 농정 40년사」, 제17장, 제18장, 1989.
- 古茶武男, “植物檢疫の 現状と 課題,” 「農業と經濟」, 富民協會, 1993, 10, pp.48-57.
- 加藤信夫, “GATT UR 農業交渉うち檢疫・衛生分野における 交渉の現状,” 「輸入食糧協議會報」, 1991.
- 日本植物防疫協會, 「植物防疫の軌跡」, 제7장, 1991.
- 中央畜産會, 「日本の畜産物貿易」, 제4장, 1992.
- AQIS, “Food Safety and Quarantine for Australis’s Future,” *Strategic Plan for the Austral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 1992-1996*, Canberra. 1992.

Quarantine Review Committee, *Australian Quarantine Requirements for the Future.*, Canberra, 1988, 5.

USDA, *APHIS: Changing for the Future*, 8, 1989, 9.

연구보고 285

동식물 검역의 대내외 여건변화와 대응방안

적은날 1993. 12. 펴낸날 1993. 12.

발행인 정 영 일

펴낸곳 한국농촌경제연구원 (962-7311~5)

130-0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등 록 제5-10호(1979. 5. 25)

적은곳 (주) 문 원 사 739-3911~4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